

---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被監査機關 財務局

---

日時 1995年11月23日(木) 午前10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

---

(10時 19分 監査開始)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내지 第17條의10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查에관한條例에 의하여 財務局에 대한 95年度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우리가 財務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는 저희들 4代議會에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行政事務監査에 앞서서 行政事務調查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財務局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서류를 監査에 준한 調查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틀간 企劃管理室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또한 行政事務監査를 이러한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代 때 行政事務監査에 그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4代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4代 議會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業務報告와 전혀 다를 바

가 없는 行政事務監査가 시작됐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고, 이러한 방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 委員들이 同意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통지가 되어 계시지 아니하고, 또 장소의 물리적인 制約으로 인해서 이러한 委員會 會議場 안에서 다시 行政事務監査를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임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午前 監査 자체에서는 우리가 직접 장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볼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午後 監査에서는 財務局에 관련된 行政事務監査 자료의 바탕이 된 모든 장부와 증빙을 이 會議室에 어떠한 공간을 이용해서도 좋으니까 준비를 해 주셔서 진정한 行政事務監査에 준하는 이러한 형태의 監査가 될 수 있도록 財務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行政事務調査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業務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의 市 執行部에서 하는 일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行政事務調査를 통해서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명실공히 行政事務監査가 行政事務調査보다는 훨씬 市民을 위한 강도 높은 監査가 되어야 할진대 業務報告 형식으로 마치겠다는 안일한 자세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시작하기 전에 財務局 관계 모든 局長님 이하 公務員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바이니까 과거 형태와 같은 監査로 임하지 마시고 이제 市民을 위한, 진정으로 民主化 그리고 經營市政을 위한 서울市政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

개적이고도 투명한 자세로 監査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歲入増大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맡은 바 職務에 충실히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財務局所管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監査해 주시고, 財務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委員들의 질의에 答辯하여 내실 있는 行政事務監査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證人 宣誓가 있겠습니다.

宣誓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36條 第5項 및 同法施行令 第17條의4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僞證한 關係公務員은 告發될 수 있으며, 委員會의 出席要求를 받은 者가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또는 陳述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萬 원 이하의 過怠料가 .賦課됨을 알려드리니 關係公務員은 正當하고 성실한 證言과 意見陳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宣誓는 財務局長과 財務局 4級 이상 公務員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對象公務員은 起立하시고 財務局長은 發言臺에 나와 宣誓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宣 誓)

○委員長 文錫珍; 다음은 財務局長께서 인사하시고 財務局에 대한 幹部紹介가 있겠습니다. 財務局長은 나오셔서 인사 후에 幹部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95年 한 해도 1個月 남짓하여 한해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第4代 市議會가 출범한 것은 5個月에 불과하지만 그간 市政發展과 市民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는 실로 크다고 評價되며, 그 동안에 文錫珍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들의 議政活動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찬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行政監査는 95年 한 해의 業務에 대한 總 評價라고 생각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 財務局 全 職員은 渾然一體가 되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市民들이나 委員님들의 기대에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行政監査를 통하여 이러한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市政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民選市長 이후 市政의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市民의 욕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行政이 스스로 해야 할 추진 과제도 많으며 委員님들의 요청과 기대도 대단히 크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行政制度나 慣行, 公務員의 태도 등 行政環境과, 社會環境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기대 사이에 괴리의 폭을 좁혀 나가는 것이 執行부와 議會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委員님들의 다수의 기대와 요구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에 우리 執行부가 同意하면서도 바로 施行할 수 없는 것은 그 요구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러한 行政環境과 社會的 既存秩序를 감안하여 획기적인 계획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委員님들의 高見에 더욱 귀 기울여 市政發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이러한 執行부의 입장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 委員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幹部結음을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會計課長 林綵瑾, 稅政課長 李君杓, 稅務指導課長 金煥吉,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地籍課長 金復鎭)

이상 幹部紹介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음은 財務局 業務報告를 듣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 나오셔서 所管業務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제가 報告드리는 것은 한 해에 처리한 主要業務들을 報告를 드리기 때문에 기왕에 報告드린 부분, 議會에 報告드린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報告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報告)

95年度 推進事項 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한 95年度 推進事項을 報告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 여러분의 質疑와 執行部の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勝建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勝建 委員; 金勝建 委員입니다.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특히 담배消費稅하고 綜合土地稅 문제를 집중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것은 學論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長에서도 모두에 저희 財務經濟 委員會가 行政事務監査에 임하는 어떤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에 대한 財務局의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 報告內容을 들으면서 本委員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그냥 나열식으로 시간을 좀 메꾸기 위해서, 또 지면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財務局에서도 앞으로 行政事務監査나 또는 다른 業務報告에 있어서 지금하고 좀 다른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의 노력이 일단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趙 淳 市長이 특별히 들어선 이후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行政은 市民들이나 國民들한테 투명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執行部가 일을 하는 部署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시론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접시를 닦는 역할을 執行部가 합니다. 그 접시를 닦다보면 접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닦는 사람이 제일 많이 깎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접시를 깨뜨렸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공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접시를 깨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접시를 깨뜨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접시도 대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委員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27選舉 이후에, 趙淳 市長 就任 이후에 市稅 引上計劃이나 確定案이나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이 곧이 僞證의 罰이나 이런 것의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市民에게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한 行政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6·27選舉 이후에 있었던 서울市の 市稅 引上計劃과 確定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市稅 引上和 確定案에 대해서 財務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勝建 委員; 答辯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질문을 한 다음에 答辯을 듣도록 하지요? 補充質疑 먼저.....

○委員長 文錫珍; 李亮漢 委員님 補充質疑하시겠습니까?

○李亮漢 委員; 李亮漢 委員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土地綜合所得稅 종합숫자를 내기 위해서 94年度에 公示地價에 비하면 24.9 %, 95年度 29.6%,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를 저희들이 綜合土地稅를 이번에 냈습니다. 95年度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까, 지금 이 예정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20%쯤 올라간다고 그러면 약 한 35%쯤 되는데, 지금 현재 95年度 豫算이 나와있기 때문에 豫算案에 반영될 줄 압니다만 내년도에는 綜土稅 公示地價의 比率이 몇 % 될는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答辯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金勝建 委員님 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

니다만, 市理의 引上部分은 전번에도 제가 答辯을 드렸습니다만 區 자체로 引上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곧이 引上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번에도 제가 분명히 答辯을 드렸습니다만 靑形 자동차에 대한 철재 市稅를 減免해 주던 부분을 減免 廢止를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廢止가 되면 실질적으로 靑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稅金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稅法에, 아까도 보면 우리가 각종 稅金의 新設 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단 6·27이후에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稅法의 改正들은 지금 오랜 기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어서 확정이면 稅金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稅金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로서는 계획이 없고, 이제 李亮漢 委員님께서 얘기하시던 綜合土地稅 부분을 과거에는 이 課標의 인상을 政府計劃에 맞추어서 全國을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市 자체의 계획에 의한 引上이 아니고 바로 政府計劃에 의해서 지금까지 죽 引上이 되어왔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報告書에 보면 96年度부터 課標에 의해서 하던 것을 公示地價 制度로 전환한다는 것이 政府의 基本方針이 되어서 지금 그것이 國會에 나가 있습니다. 國會에 나가 있는데, 당초에 나갈 때에는 法에서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法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이 國務會議過程, 지금 法 審議 過程에서 公示地價를 하되 거기 별도의 課標를 또 하는 案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확



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떤 쪽으로 변질이 되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內務部가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取得稅나 登錄稅 같은 것은 公示地價로 하도록 그렇게 課標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綜合土地稅는 公示地價의 일정률을 議會의 同意를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議會가 그것을 사실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法案이 나갔는데 그런 것이 전부 빠지고 지금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取得稅나 登錄稅의 경우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案이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해서 公示地價에 일정률을 課標로 하는 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稅法案에 나가 있는 부분이 住民稅 7.5%를 10%로 이것은 地方稅法改正案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教育稅 때문에 이런 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住民稅 부분도 우리 서울市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政府가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의한 계획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서울市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政府 전체의 균형이라는 이 指針에 의해서 내려올 때는 서울市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리고 아까 綜合土地稅 그 부분은 나중에 質疑하신다고 했으니까 李委員님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같이 듣도록 하지요.

○李亮漢 委員; 네, 같이 하겠습니다.

(「補充質疑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全勝建委員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金勝建 委員;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솔직한 行政을 해야 된다, 또 투명한 行政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權五虎 局長님 前任 局長께서 저희가 6·27選舉 이후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報告하는 동안에 住民稅 문제하고 都市計劃稅 문제를 報告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第80回 臨時會 速記錄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第80回 臨時會에서 同僚 委員인 梁敬淑委員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速記錄에 나와 있고, 또 第81回 臨時會 本會議 質疑에서 本委員이 質疑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核心 內容은 이것이었습시다. 住民稅를 현행 7.5%에서 10%로 2.5% 引上하면 1,900億원, 그 다음에 都市計劃稅를 현행 0.2%에서 0.3%로 0.1% 引上하게 되면 約 1,000億원 정도가 歲入이 增額이 된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局長님 答辯대로 한다면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中央政府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 한다, 서울시 자체내의 계획은 없다, 이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세법 中에서 지금 우리 나라 地方稅 中에서 中央政府로부터 조정받지 않는, 컨트롤 받지 않는 稅가 몇 개나 됩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

○金勝建 委員; 제가 말씀을 계속 더 드릴게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金勝建 委員; 그리고 이 住民稅 문제가 올라 가는 것 立法

豫告가 언제 됐어요? 그리고 本委員이 어떻게 그러면 立法豫告되지도…….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점장이라도 아닌데 7.5%, 10%정확하게 올라간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이것을 지금 서울市の 상당 부분이, 특히 財務局의 상당 부분은 中央政府의 國家委任事務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國家委任事務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中央政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만 한다, 그 答辯은 答辯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財務局長이 住民稅를 올릴 수 있는 것은 地方政府가 올릴 수 있는 포션이 있습니다, 條例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國家에 관계없이, 정확히 좀 보시면 住民稅의 稅率을 우리 地方自治團體가 議會하고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彈力稅率인가 뭐 그것인데 그 부분을 분명히 올린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稅法體系에서 그것을 올리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報告를 했지 내년에 한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國家가 그것 말고 자의적으로 教育稅 명목으로 이것을 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住民稅 상승은 사실은 教育稅의 新設이나 마찬가지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市가 전번에 얘기했던 올린다 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補充質疑……」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補充質疑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지금 財務局長께서 계속 앞뒤가 안맞는 答辯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答辯이 나올 줄 알고 8月 財務局 業務報告書를 가져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市 條例改正에 의한 稅率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彈力稅率의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對象稅目이 住民稅, 都市計劃稅, 自動車稅 등 5個 稅目이다. 그런데 稅率을 50% 加算 調整 가능한 稅目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報告를 했습니다, 業務報告를.

○財務局長 權五虎; 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때 당시의 財務局長께서 뭐라고 報告를 했느냐 하면 內務部에 地方稅法改正을 우리가 요구해 냈다라고 분명하게 報告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金勝建委員이 물었듯이 住民稅 7.5 %를 10%로 올리면 1,900億원이 徵收되고, 都市計劃稅 0.2%에서 0.3%를 올리면 1,000億원이 徵收되니까 議會에서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梁敬淑 委員;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올릴 계획이 없고 中央政府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올린다는 얼토당토않는 答辯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에서 內務部에 稅法改正까지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올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가 해놓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財務局長 權五虎;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項目은 政府가 統制를 해서, 政府가 고쳐야 될 稅目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條例로서 그냥 고칠 수 있는 稅目입니다. 그것을 政府에 요청할 이유도 없고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올릴 때는 議會가 條例를 改正을 해야 되기 때문에

議會의 同意를 받아야 되고 議會가 없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다섯 개 종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릴 수 있는 稅目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中央政府에 稅目 요청을 한 것은 오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財産稅의 경우에 一般住宅用 이외의 건물에 대한 稅率의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教育稅徵收交付金의 요청이라든지 그런 稅法들을 계속 우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뿐 아니고 전에 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을 따름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 서울市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그 5個 稅目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고, 지금 그계획이 없습니다.

○梁敬淑 委員; 서울市가 내년 1月 1日부터 下水道稅를 올린다고 발표했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무슨 稅요?

○梁敬淑 委員; 下水道稅요.

○財務局長 權五虎; 下水道使用料.

○梁敬淑 委員; 使用料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稅金이 아닙니다.

○梁敬淑 委員; 使用料나 上水道使用料도 올리겠다라고.....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올립니다.

○梁敬淑 委員; 그래서 앞으로 議會에서 많이 도와달라라는 그런 얘기도 했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올립니다. 그것은 稅金은 아니지 않습니까?

○梁敬淑 委員; 公共料金이나 税金 이런 부분을 지금 분명히 8月부터 趙 淳 市長 就任 이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財務局長 權五虎;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우리 報告書類에 보면 公共料金を 현실화 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보면. 税金하고 그것은 분리를 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公共料금이 税金은 아니지만 거의 税金에 가까운, 모든 시민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財務局長 權五虎; 자, 여기 오늘 報告書에도 公共料金 引上을 현실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고, 税金 부분은 또 税金 부분대로 들어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문제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引上案을 올린다는지, 아니면 税金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처음 우리가 業務報告를 받았을 때 이미 이것은 계획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 財政은 지금 財政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아까 얘기한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議會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公共料金 부분은 다음달에도, 여기 財務經濟委員會에서도 手數料條例를 改正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公共料金の 현실화율이 실제 費用에 비해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그 條例만 해도 23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가 되

도록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基本方針이고 지금 제가 얘기한 金勝健 委員님한테 전번부터 자꾸 계속해서 그런 質問을 해 오시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우리 市로서 올릴 부분, 아까 이것은 市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內務部와 관계없이 우리가 住民稅 몇 %올리자 하는 案은 提案을 해서 同意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안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동일한 내용으로 李亮漢 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局長님 答辯하시는 것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합니다. 묘한 것이 왜 묘하냐 하면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第11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해서 저희들이 담배消費稅로서 428億원에 대한 129億원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財務局에서 보고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住民稅가 95年度에 645億원이예요. 맞지요, 이것이.

(「450億원입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6,450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단위를 천단위를 하나 줄였네요. 그런데 이것이 1/4이, 1/3이 오르면 얼마입니까, 지금? 約 2,000億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7.5%에서. 아까 담배交付稅가 1,292億원이지요? 그러니까 2,000億원 정도의, 財政法에서 담배消賣稅에서 내는 45%를 交付稅에 내는 金額하고 住民稅에서 지금 2.5%올라간 金額이 우연히 맞았는지 이것은 計算이 된 것인지. 제가 볼 때 담배消費稅에서 45%를 地方教育財政法 交付金으로 넘겨줄 金額하고 이것을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에서 45%라는 條項을 빼고 이제 주민세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

러면 내년에 教育廳에다 2,000億원이라는 돈을 서울시가 더 지원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財務局長 權五虎; 우리 稅政課長이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李君杓; 稅政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님들께서 質疑해 주시는 그 事項들은 지금 저희가 마치 무슨 稅金을 올리는 것을 감추고 있는양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가 稅金을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議會를 거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稅金과 稅外收入 手數料를 혼동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稅金은 올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稅外收入의 경우는 저희 財務局에서 총괄만 하다 뿐이지, 말하자면 下水道使用料를 올린다는가, 水道使用料를 올린다는가 이런 것은 稅金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은 部署別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말 안에까지 이천 使用料나 이런 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하기 전에 委員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議決을 받아서 하는 事項이지 저희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李亮漢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담배消費稅의 45 %가 教育財政交付金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住民稅의 7.5%를 10%로 올려서 그 나머지 金額을 나중에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 財務局에서는 인컴, 歲入만을 관리합니다. 내주는 것, 거기에서 몇%를 어디로 준다 이런 資金管理



계획은 企劃管理室長 所管事項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稅金을 더 收入해서 어디에다 쓸 것이냐 그 쓸 것에 대한사항은 저희 財務局長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企劃管理室長 소관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建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金勝建 委員; 어제 企劃管理室 할 때에도 계속 中央政府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先進國에서도 政府間 관계, 또 영어를 써서 좀 미안하지만 인터가버먼트 릴레이션 할 때 보면 中央政府하고 地方政府하고 문제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 財政問題입니다. 豫算, 돈 문제인데 이 財政問題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가 계속 中央政府에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가 內國稅의 45%를 부담하고 있고, 個人 國民들의 國稅擔稅率이 높고, 또 우리는 地方交付金, 地方財政金, 地方讓與金에서 거의 서울시는 혜택을 못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市民들이 서울시稅만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執行部에서 傳家の 寶刀처럼 사용하는 內國稅의 45%를 지금 부담하고있는데, 政府 立案이 된 것하고, 물론 서울시가 彈力稅率을 적용해서할 수 있는 것이 住民稅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 稅目밖에 없다 하는 그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用語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분야에서는 稅金이 안 올라가는 것이고 다만, 中央政府에서 하라는 것을 올라간다. 그 답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市稅 引上計劃이라는것이 市民들이 내는 것이지 그것이 國家 法令에 의해서 되든 市議會條例에 의해서 되든간에 市民들이 내는 稅金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條例에 의해서 制定되었든 法에 의

해서 制定되었든간에, 그렇지않습니까? 市民들이 이것을 낼 때 이것은 內務部法令에, 地方財政法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내는 税金이고, 이것은 서울市議會 財務委員會를 통해서 서울市議會 本會議 議決을 거쳐서 條例에 의해서 税金내는것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자꾸 잘못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는 中央政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지금 제가 말씀하는 뜻을 알겠어요? 서울市民이 내는 税金에 서울市民들 중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가 이것은 國家가 만든 法에 의해서 내는 税金이고, 이것은 서울市議會在 만든 條例에 의해서 내는 税金이고 이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中央政府의 立法은 立法豫告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住民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먼저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면 솔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 서울市の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올라가는, 시민들한테 부담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늘니다 하고 말해야지, 이것이 內務部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內務部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市民이 税金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勝建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綜土稅하고 담배消費稅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國務會議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망신을 당하셨어요, 市長님께서. 서울特別市長이 특별히 提案한 것이 保留가 되었

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담배消費稅와 綜土稅 交換問題. 이것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91年度 담배消費稅는 4,114億원이고, 綜合土地稅는 1,873億 원이에요. 그래서 差額이 2,241億 원이었어요, 1991年度에. 95年度에는 담배消費稅가 4,600億 원 별로 안 늘었어요, 한 500億 원 늘었는데 綜合土地稅 4,654億 원이에요. 오히려 綜合土地稅가 많아졌어요. 4년전에 2,240億 원 差額이 나던 것이 4年만에 이제 거꾸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稅金 이 문제를 확충하면서 담배 消費稅, 綜合土地稅 바뀔 것으로 확신하고 지금 歲入잡은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綜合土地稅하고 담배消費稅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제가 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勝建 委員님께서 지금 稅率을 올리고 地方稅를 더 거두는 것은 市長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抗議도 할 수 없는 지금 法構造體系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國稅를 올리는 부분의 計劃을, 國稅를 얼마나 올릴 것의 계획을 財政局長이 답변하기에는 그것은 제 한계 밖입니다. 아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答辯을 하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答辯을 못드릴 것이고, 전번 議會에서도 분명히 제가 우리 서울市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서울市가 引上要求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런 引上要求를 했다고 答辯을 드리지만, 政府가 教育財政 문제 때문에 政府內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立法豫告된 사항은 제가 오늘 報告를드리고 그 전에, 그 때 제가 議會에서도 答辯할 때에도 그런 立法豫告가 된 사항도 없었고, 또 住民稅가

올라간다는 부분도 공론의 대상이 되었지 그것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제가 國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담배消費稅하고 綜土稅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됐지만, 지금 우리 區 財政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區 財政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區 財政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區 財政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인데, 아까 綜土稅가 담배消費稅보다 많아진다는 문제는 區 財政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市가 綜合土地稅를 더 많이 伸張率이 높은 것을 가져오므로써 市와 區의 財政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金勝建委員님의 우려입니다.

市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려 때문이 아니고, 잘사는 區와 못사는 區의 財政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綜合土地稅와 담배消費稅의 격차의 문제는 그 후에 新聞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이제 金勝建 委員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論外로 하고 생긴다고 가정을 해서, 綜合土地稅가 월등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서 서울市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담배消費稅보다 綜合土地稅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것을 區의 財政交付金 財源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區의 財政에는 아무 손실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財政 격차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基準財政需要充足度라는 것을 지금 서울市가 쓰고 있고, 그 말이 自立度 보다는 아주 정확한

얘기인데 基本財政需要라고 하는 것은 그 區가 그 人口와 그 住民과 그 公務員으로서 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經費입니다, 基本의 經費예요. 그 부분을 자기 歲入가지고, 자기 區에서 들어온 區稅를 가지고 區稅와 稅外收入金을 가지고 모자라는부분에 대해서는 市에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충당을 해 줍니다. 100%는 못미치지만 한 구십 몇% 정도는 전부 충당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基準財政需要가 30%안 되는 區나, 90%되는 區나, 70 %되는 區나 전부 똑같은 수준의 區政 살림을 할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鍾路區가 삼십몇%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기보다 한 3배 더 들여서, 예를 들면 종로하고 같은 수준의 行政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미만 되는 區는 지금 그 財政 격차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江南區의 경우에는 말이지요, 鍾路區나 다른 22個 區를 100으로 쳤을 때 江南區가 213%입니다. 113%의 더 많은 財政을 가지고 江南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기 때문에 여기 江南區의 李亮漢 委員님께서 들으면 또 욕을 하실지 모르지만 廳舍 짓는다고 그래서 지금 육백이십몇억원을 預置를 하고, 또 市에 替費地가 나오면 그 替費地를 자꾸 사들입니다. 이런가 하면 나머지 22個 區는 여러분들 사시는 區에 아무데에 가서도 저 뒷골목에 있는 보도블록은 깨져도 지금 못고치고 있어요. 제가 城北區 副區廳長할 때 石串洞 쪽에 가면 저것을 고쳐야 되는데 豫算이 모자라서, 5, 6億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財政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지 市가 區에 내려가는 그것을 더 받아서 市가 利益하자고 제가 그런 提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더 드리면 國務會議가 이 내용이, 改正의 내용이 안 맞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얘기를 빌리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論議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뭐냐, 區廳長協議會에서 바로 반대를 하는 부분을 왜 올렸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市가 그간의 경위는 설명을 못드리고 區廳長協議會에서 일방적으로 公文을 드러서 國務委員들이 그 내용을 전부 이해를 못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자 하는 쪽의 保留이지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保留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答辯에…….」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잠깐만요.

(「하나만 더 質問하고요」 하는 委員 있음)

죄송합니다.

우리 綜合土地稅하고 담배消費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委員會 안에도 贊反의 의견이 갈리고 있었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行政事務監査에서 계속 그 문제로 논의하면 시간적으로 많은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한 마디만」 하는 委員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發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님이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金洪奎委員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金洪奎 委員입니다.

저는 公有財産管理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서울市에서는 一般市民이 市有財産을 無斷占有하거나, 또 無斷占有한 件에 대해서 68件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訴訟을 市에서 提起하였지요?

그리고 國家機關 및 自治團體에서 서울市 公有財産을 無斷點有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市有財産土地 554筆地에 28萬 9,719坪과 建物 3萬 6,592坪을 無償使用하고 있으며, 일선 行政機關 및 區廳 洞事務所, 區民會館, 老人亭, 어린이집 등이 市有地上에 無斷占有하고 있는 현황은, 서초구 청사부지를 보면 약 한 2萬 5,550.4m<sup>2</sup>, 서울市公有財産管理條例第21條 第3項에 의하면 "國家機關에 無斷點有使用 中인 財産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還收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財産은 國家機關과 협의하여 貸付料를 徵收하거나 交換 또는 賣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規定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市에서는 적극적인 財産管理를 하지 않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財産上의 막대한 損失을 보고 있어요.

瑞草區 廳舍敷地가 1萬 6,618m<sup>2</sup>에 서울市垆地에 建築이 되어 있고, 그것을 財産價額으로 換算하면 1,380億원이나 되는 바, 서울市에서는 그간 賃貸料를 徵收하지도 않고, 賣却이나 交換 등의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서울市에서는 地方財政法施行令 第88條第2項에 의거 無償貸付하였 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나, 서울市公有財産管理條例 第30條에는 無償契約의 경우에도 반드시 貸付契約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있고, 契約締結을 하지만 하지 않은 關係公務員은 마땅히 해야 할 직무유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市民의 公有財産을 無斷點有할 경우, 市民이 無斷點有할 경우 엄한 處罰을받고, 辨償金을 追徵당하고, 行政機關 등에서 관계 規定을 어기면 목인하는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法 適用으로 인하여 市民들로부터 市政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法 適用으로 市民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철저한 財産管理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다만, 지금까지도 市稅問題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시다만, 瑞草區나 江南區는 自立度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瑞草區廳 같은 데도 무려 1,380億원이라는 그러한 현행 公示地價로 되어 있는 金額을 현재 그대로 無斷으로 사용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마땅히 서울市에서 財産管理 측면에서 했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그 동안 누차 財務局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調達廳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서울市에서 지금까지 調達廳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을 하거나, 또한 調達廳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리베이트 金額이 1年이면 대단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關係公務員의 얘기를 들어보면 PC같은 경우도 1臺를 구입을 하더라도 그 1臺 구입하는데 여기에는 機種이 딱 어느 機種이 맞는데 調達廳에서 내놓는 그 機種은 몇 가지 한정된 機種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구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는 機種을 구입해서 써야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調達廳에 의뢰해서 계속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은 완전한 地方自治制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調達本部를 뒤편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調達廳에 手數料를 쥐가면서 이렇게 서울시 豫算을 浪費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다 더 확실한 물품도 구입하고 모든 면에서 서울시 財政自立度도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 調達本部를 우리 서울시 財務局 산하에 둔다거나 무슨 획기적인 그런 方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줄 자료를 주지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할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答辯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市有地에 대해서 國家가 지금 占有하고 있는 부분, 또 基礎自治國體가 占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還收와 그 다음 有償貸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경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國家와 地方, 그 다음 基礎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그어진 것이 지금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區 財産과 市の 財産은 88年 8月 15日 이전부터 區廳이 가지고 있던 區廳 財産이고, 그 이후로 區廳이 다시 깔고앉은 것은 市の 財産은 다시, 그 전까지는 전부 市로 되어 있던 것이 88年 8月 15日 그 때 區가 가지고 있는 것은 區 財産이다, 그 이후에 집을 짓거나 한 것은 市の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새로운 廳舍를 짓던 데는 전부 區 財産으로 登錄이 되었고, 瑞草區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着工이 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市有財産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들이 바로 區 財産과 市有財産이 갈라지게 된 경위가 어떤 시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瑞草區廳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땅의 返還을 요구하고 있고, 예를 들면 鍾路區廳의 경우도 이쪽 消防本部 자리하고, 保社局에서 쓰고 있는 자리들도 지금 鍾路區廳이 家屋臺帳에 登記를 안해 줍니다.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것이니까 그냥 내놔라 하고 안해 주고 있어서 전번에 區廳長協議會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論難이 되어 있고, 瑞草區廳도 이제 그런 論難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瑞草區廳만 해도 그것을 일시에 내놓을 그런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결국 그것을 찾아오자면 瑞草區廳이 同意를 해서 저절로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놓으면 우리가 訴訟을 提起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고, 우리 區하고의 관계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區廳長들도 市에 대한 불만이, 사실 우리 公務員들 인식도 區와 市가 한집살림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류의 문제 때문에 市가 그럴 수가 있느냐 쪽의 얘기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區廳이 돈이 없어 廳舍를 못 지었을 때 市가 지금도 廳舍짓는 代金の 일부를 割愛를 해주고 있는데, 지어놓은 廳舍를 지금 당장 돈 내놓으라고 그러겠느냐 이런 쪽이 區廳의 抗辯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돈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

고, 그 다음에 國家하교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警察局이 서울市 市長 밑에 警察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警察派出所라든지 이것을 市有地에 그냥 지었습니다, 警察書도 짓다가. 그것이 地方警察廳이 獨立이 되어서 國家機關으로 가면서 國家財産을 지금 警察署가 상당히 많이 占有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 내놓으라고 우리도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받아올지도 모르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땅도 상당히 많습니다. 世宗文化會館 敷地의 상당 부분이 國家의 것이고, 서울運動場, 東大門運動場 그것도 國家의 것입니다, 孝昌運動場 敷地도 國家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올해도 靑瓦臺 올라가는 景福宮 쪽 그 쪽에 우리 市有財産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하고 그 쪽에 공원조성을 해 놓은 靑瓦臺쪽에 있는 것하고 교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당연히 완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시에 바로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金洪奎 委員; 그런데요.....

○財務局長 權五虎; 추진상황도 몇 번 報告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 財務局長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몇 십명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瑞草區廳을 지을 당시의 땅이 市有地였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金洪奎 委員; 그 때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것을 許可해 준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대로 짓게 놔둔 것입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그 당시?

○金洪奎 委員; 네.

○財務局長 權五虎; 使用承認받아서 해 준 것이지요.

○金洪奎 委員; 당연히 貸付契約書가 있어야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런데 그 당시에는 使用承認으로 그냥  
집 짓도록 許容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분명하게 公有財産  
管理條例에 보면 第30條에 貸付契約書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無償으로 하든 有償으로 하든 확실하게 貸付契約書  
를 締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財産管理課長입니다.

瑞草區廳에 대해서는 저희 局長님이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88年 5月 1日 이후에 청사를 建立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市  
財産을 넘겨줄 수 없게 되어 있는 財産입니다. 그래서 현재까  
지도 市 財産으로 계속 소유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 청사를 짓게 된 것은 江南區廳에서 분리가 되면서, 청사가  
瑞草로 분리가 되면서 市長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승락을 해  
주고, 그 土地 문제는 추후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종료를  
한 것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追後면 그것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  
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아직도 契約書도 체결 안해 놓고 있  
고 財務局長님 答辯은 추후에 그것은 봐서 사정상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말  
이에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買入을

하라고 公文을 계속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瑞草區廳 얘기는 區議會에서 전혀 이것은 豫算 확보라든지 그것에 대한 의견이 전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잘.....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도저히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바로 문제입니다.

貸付契約書라고 분명히 이것을 체결하도록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하고 그대로 承認해 주었다는 자체는 문제 아니에요?

(「貸付契約書 있나 없나만 答辯하면 돼요」 하는 委員 있음)  
없다는 겁니다, 貸付契約書가.

○財務局長 權五虎; 그 당시에, 지금도 分區를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江北區가 됐을때 江北區라는 어떤 특정한 주체가 없습니다, 瑞草區廳에서 분리할 때요. 그러면 그區에 대한 財産確保 같은 것을 市가 豫算을 전부 줘서 그 分區 豫算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땅도 그러면 이것을 하자 그래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市가 그 區分の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契約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金洪奎 委員; 아, 답답하구만. 없을 것으로 봅니다라는 答辯이 財務局長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財務局長 權五虎;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原則의 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金洪奎 委員;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行政의 慣行이라든지 지금까지 있는 그 부분을 전혀 도외시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質問하시면 그것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구구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 行政 慣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까지 갔다는 그런 해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委員長 文錫珍; 財務局長께서 答辯하실 때에 정확하게 일단 答辯하십시오. 그러니까 契約書가 있느냐 하면 없다, 있다 答辯을 하시고…….

○財務局長 權五虎; 글쎄, 그 契約書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委員長 文錫珍; 그 다음에 없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 答辯을 하셔야지 이렇게 여러가지 다른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答辯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質問에 대해서 먼저 答辯을 하시고, 그 다음 거기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재차 물으시면 또 答辯하십시오.

○金洪奎 委員; 本委員이 자료요청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契約書を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契約書가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아까 財務局長님 말씀대로 이제 瑞草區廳에다 사라고 해야지, 막연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商去來上 契約書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國家의 財産은 우리 서울市の 財産입니다. 서울市の 財産을 아무 이유없이 그냥 쓰시오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지만 어디에다 조그마한 假建物を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땅에다가, 제가 建물이 10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다 창고 하나 넣느라고 한평 반 조그맣게 하나 假建物로 달아냈어요. 이것

도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바로 철거했습니다.

하물며 그래도 江南의 가장 중심지라는 瑞草區廳 같은 데, 물론 또 大韓民國의 중심지라는 이 鍾路區廳 廳舍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아직도 契約書 하나가 없어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契約은 쌍방이 협의가 되었을 때.....

○金洪奎 委員; 협의 없이 왜 認可를 해 줍니까?

○財産局長 權五虎;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警察署 얘기를 했는데警察署가.....

○委員長 文錫珍; 잠깐만이요.

○財務局長 權五虎; 서울市有 財産이었습니다. 그러다가 法の改正으로 警察署가 國家로 넘어갔어요. 거기 契約書가 지금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金洪奎 委員; 이 區廳舍가 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區廳舍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金洪奎 委員;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警察廳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만을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 당시에 그 分區의 주체가 서울市長이 되었습니다, 市長이 그 청사를 마련해 주고 그 豫算도 市가 전부 투입을 했어요.

○金洪奎 委員; 그러면 地方自治制가 몇 年度되었지요? 91年度에 되었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金洪奎 委員; 91年度에 정식으로 基礎, 廣域이 出帆했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金洪奎 委員; 그러면 당시에 地方自治制라면 분명히 그 때

라도 받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글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國家의.....

○金洪奎 委員; 이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해 달라고 해 주겠어요?

○財務局長 權五虎; 글썸,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警察署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해 달라고 그래도 지금 그 사람들이 안해 줍니다.

○金洪奎 委員; 왜 자꾸..... 저는 警察署, 警察廳 문제는 얘기 안했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가 마찬가지로 얘기입니다. 지금 鍾路區廳도 그것 안해 준다니까요?

○金洪奎 委員; 안해 주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글썸, 그 부분은 아까 잘못된 부분이 그런 경위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잘못하기 위해서, 혹은 그 法을 위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李廷義 委員님 議事進行發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가만, 제가 답변을 아까 덜 드린게.....

○委員長 文錫珍; 답변하기 전에 議事進行發言을 듣고 答辯을 하세요.

○李廷義 委員; 本 監査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議事進行發言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質疑와 應答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政策的인



質疑에 應答이 있다 하더라도 그 應答이 사실상 서류라든가 정확히 딱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계속 말의 연속일 뿐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를 지적해서 확인이 됐거나 한 것은 서류상으로 개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 法規違反 등등을 따져서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한 가지 質疑를 가지고 끝까지 말로서 答辯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우리 이틀뿐이 없는 財務局 監査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政策質疑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答辯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書類確認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고 바로 바로 한건 한건 넘어가도록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委員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答辯도 서류상으로 구구한 변명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우리는 어디까지나 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規定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한 변명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서 答辯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制止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委員長님께 建議를 드립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信浩 委員님.

○財務局長 權五虎; 가만, 답변을 제가 덜드렸는데 아까 調達廳 문제 그것은.....

○金洪奎 委員; 도대체 委員長 어떻게 이렇게 會議를 합니까? 답변도 안 듣고 말이야, 답변을 물으면 答辯 듣고 나서 議事進行發言을 하든가.....

○委員長 文鎮珍; 議事進行發言은 答辯 중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요.

○金洪奎 委員; 아니, 會議 運營의 묘미를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文鎮珍;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金信浩委員님도 같은 시기에 議事進行發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한 것이니까.....

○金信浩 委員; 議事進行發言이 아니고 저는 質疑 내용이니까 答辯을 받고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行政事務監査의 기본적인 의문을 시작할 때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제도 이미 여러분 하셨을 때 느끼셨지만 이것이 質疑應答하는 어떤 業務報告 형태가 되어서는 行政事務監査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탁을 드렸지만 오후에는 분명하게 오전에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반 장부와 증빙을 여기에 갖다 놓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전 중에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직접 열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議事進行發言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質疑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答辯을 다 듣고 다음 議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네, 調達廳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지금 이 자료에 들어 있다고 지금 答辯을 하는데 그 부분 이따가 다시, 만약에 자료가 덜 갔으면 해명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調達廳에 調達手數料를 주고 의뢰를 하는 부분은 調達에關한法律施行令 第14條, 第15條 및 施行規則 第7條에 의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用 資材 같은 것은 5,000萬원 이상 물품의 경우에 하고, 100億원 이상의 施設工事 이런 경우에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法에 의해서 전부 의뢰를 하고 있고 다만, 天災地變이나 緊急을 요할 때는 市가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번에 各 區에서도 이런 건의를 한 일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가 調達本部를 만들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費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調達廳 같은 그런 상당한 機構를 우리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과연 득실의 부분이 있겠느냐의 문제는 검토를 해 봤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거의 같은 수준일 것입니다. 리베이트 주는 부분이 調達本部 運營經費에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몫이 됩니다. 그리고 國家 전체로 보면 物價調査라든지 이것은 한 사람이 한번만 하면 될 것을 이제 서울 市가 또 해야 되는 그런 二重性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그대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서울 市가 이것을 안함으로써 과거의 隨意契約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서울 市의 의혹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區廳長協議會에서 이 建議가 들어왔을 때 현재로써는 그런 상태로 해서 하고, 앞으로 區하고 그 다음 市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質疑하시기 전에 調達廳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좀 미약하신 것 같습니다. 質疑하신 내용 자체의

핵심은 그래도 이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해서 調達에 대해서 그러한 직접적인 權限을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調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調達手數料 줘가면서도 市中보다도 비싸게 사거나 선택의 제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私企業에서도 같은 事業部 내에서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調達에 있어서 즉, 가장 최소한의 經費로 經濟性과 收益性을 바라는 입장에서 모든 各 部署가 경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調達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調達手數料를 줘가면서 과거 방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는 金洪奎委員님이 質疑하셨지만 과거에도 이미 재차 市議會 안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이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答辯을 하시고 調達手數料를 提出한 金額이라든지, 또 실제로 調達한 金額이 市中보다 쌌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 하시고, 단순히 서울시가 隨意契約만 하면 의혹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의혹을 피하겠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피하려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 法上 金額에 제한이 있다는 그 부분도 區廳長協議會에서 나온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法에 대한 改正을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꾸로. 그러한 입장에서 적극적인 答辯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朴南植 委員님

○朴南植 委員; 朴南植 委員입니다.

財務局長과 財務關係 公務員들의 서울市民的 복리증진을 위

하여 不撤晝夜 애쓰시고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우선 감사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市の 財務局이란 市政의 가장 중요한 機關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財務局的 關係公務員들이 서울市民을 위해서 최선의 奉仕者가 될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자세부터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市金庫가 80年 동안이나 獨占契約을 해음에 있어서 商業銀行, 그리고 住宅銀行은 千百萬 市民을 위하여 과연 크게 기여했으리라 本委員은 사료됩니다만, 80年 동안 慣行으로 지금까지 獨占契約된 것은 부적합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할 때 本委員으로도 이제 文民政府로 하여 地方化時代에 일대 개혁을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7日 本 常任委員會에서 梁敬淑 委員의 市金庫運營에 관한條例制定의 提案과 金信浩委員의 贊成으로 本 會議에 上程되었으나 本委員會에서는 本委員들의, 여기 지금 현재 현장에 계시는 委員들의 贊反의 兩論으로 심심한 討論이 있었기에 정말 市民을 위한 條例가 되었으면 하는 염려로 本委員은 市金庫의 잔여 임기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서울市 執行部の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할 때 市金庫運營에 대한條例를 지금 당장 制定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로 심려했던바, 本委員은 정말 이 條例가 훌륭한 條例로 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해서 留保하자는 그런 提案을 했던바, 지금까지 留保로 되어 있으며, 同僚委員들에게 本委員은 그 동안에 충심으로 임기동안 本 條例를 서울市民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훌륭한 條例를 制定하자는 뜻에서 일치하자고 굳은 의지로 간담회에서 決意한 바도 있습니다.

財務局長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7日 우리 條例를 制定할 때 그에 앞서 財務局長께서는 관계 요로와 同僚委員들에까지 전화를 하면서 條例制定에 대한 制定反對에 대한 로비를 한 것으로 주위에서 들은 바 있고, 條例制定은 否決될 것이라고 하였다는데 훌륭한 條例가 되도록 執行部에서우리와 함께, 우리 本 委員會와 함께 서로 도와서 市民의 복리증진을 위한 條例를 만들것인지, 아니면 否決시키고자 로비한 그 이유가 정말 市民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서 答辯해 주시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번째, 市 金庫運營에關한條例가 本 委員會에서 留保되었던바, 上位法에 위반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서울시 財務局과 本 委員會가 협의해서 千百萬市民을 위한 條例를 制定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 市金庫에 대한 論議는 우리 行政調査를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市 執行部側의 입장은 제가 여기서도 答辯을 드렸고, 또 저번 討論會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로비의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제 입장을 몇몇 委員님들께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論議한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이 결정에 이해를 해 달라는 수준의 것이었지 거기에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자체가 제가 財務局長의 위치에 있으면서 아주 정당한 제 요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公式席上에서도 그런 요구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도 있고, 또 討論會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條例制定의 문제는 바로 市金庫의 公開問題하고

바로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公開는 현 단계로 써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된다는 그런 議會의 요청이나 기대에는 同意를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써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法的인 문제로 볼 때도 그것이 과연 法에 합당한 條例가 될 것인지도저는 안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法의 범위내에서 條例를 제가 굳이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한다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市議會가 요구하는 부분의 것들이 최선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文錫珍;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朴南植 委員; 그래서.....

○委員長 文錫珍; 잠깐만요, 朴委員님 잠깐만요. 市金庫 문제는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적절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는 委員 있음)

양해를 구할게요. 혹시라도 발언이 틀렸거나 답변이 틀렸어도 오후 시간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의 자체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行政事務調査를 오랫동안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委員님들이 內容을 다 알고 계시고, 贊成과反對에 대한 논리도 분명히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制定에 대한 문제는 留保가 아니라 지금 審議가 연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에 論議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金信浩 委員님하고 梁敬淑 委員님 質疑하시려고 하셨는데.....

(「質疑內容은 간단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그럼 金信浩委員님 먼저하시고, 오후 시간에 하시는 것

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金信浩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質疑만 하고요, 答辯은 오후에 하고...」 하는委員 있음)

우선 먼저 金信浩 委員님 質疑부터 듣고요.

○金信浩 委員; 金信浩 委員입니다.

서울市 執行部는 서울市 財政確保와 서울市民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규율에 있어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稅外收入에 있어서 中央部處가 관여할 부분이 있고 서울市가 관여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市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서울市가 서울市民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적용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報告書 9페이지 滯納稅 徵收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초 移越滯納額에 보면 徵收額과 缺損 整理額를 합한 金額이, 徵收 目標額을 별도로 하더라도 9月末 滯納額과 합한 金額이 연초移越滯納額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지만 3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徵收對策을 세우고 11月부터 12月 2個月 동안의 計劃을 수립을 해서 進行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報告書를 언제 作成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1月과 12월에 徵收對策을 운영을 해 왔으면 적어도 지금 報告하는 시점이 한 20餘日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滯納稅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그러한 결과도 報告를 했어야 되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처 그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적어도 高額 滯納者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다음달 초에는, 적어도 11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高額 滯納者에 대한 어떠한 중점정리를 하고 強制 徵收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그런 자료를 財務經濟委員會에 자료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간단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課標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地價算定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14페이지에 보면 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한 표준지 特性和 個別土地의 특성을 비교하여 算定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地價算定을 할 때 어떠한 것을 고려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서류로써 報告를 받고자 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課標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서울市民의 擔稅率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市民들은 現 市價와 公示地價의 격차가 심한 관계로 市民들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한 자리 숫자가 아닌 10%이상 몇십% 이상 그러한 地價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그러한 稅率을 높이지 않더라도 적절한 地價를 算定함으로써 공신력을 市民들로부터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測量 不適合地 정리를 위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을 17페이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不適合地 정리를 위해서는 과연 꼭 特別法制定이 필요한 것인지, 現 法 構造下에서도 그것의 정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질문 하나 더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우선 이 質疑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바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일괄적으로 여러분이 오후에 서류나 아니면 필요한 장부를 요청하실 이런 質疑內容은 일괄적으로 각 委員님들 전부 이렇게 하도록.....

(「答辯할 것만 하고, 답변.....」 하는 委員있음)

네, 그렇게 죽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財務局長 權五虎; 3億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擔當課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月과 12月 중점 정리기간에 이것을 報告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銀行이 전번에 金庫調査를 해보시면 納付한 것이 우리한테 集計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한 보름 이상이 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銀行 收納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報告할 때는 11月末 수준이 나오면 바로 報告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地價算定 방법은 제가 직접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建設部가 지정한 基準地價를 정하는 그 사람들은 평가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하는 그 料率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料率에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것이 도로변에 접해 있느냐 안 접해 있느냐, 도로도 얼마의 거리에 접했느냐, 그 다음에 토지형태가 네모로 되어 있느냐, 세모로 되어 있느냐, 장방형으로 되어 있느냐 이

런 문제에 대해서 그 率을 전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擔當公務員은 그것을 基準으로 해서 바로 그 토지의 모양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그 率을 정해서 지금 算定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내용은, 그 算定의 방법은 실질적으로 規定 같은 것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려야 이해가 좀 되실 것으로 알고, 그것은 다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建設部나 서울市도 이것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土地의 價格이 무슨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주인에 따라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격차를, 혹은 市民의 利害關係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서울市에서도 그 사람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조사하는 사람들의 專門化를 위해서 이동을 금지를 시키고, 또 그것을 시작할 때에 1월부터 4월까지 교육을 두 번 세 번 해서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地籍 不稱合地 정리는 딱 두집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쪽 집하고 이 쪽 집이 垜地上으로 양쪽이 50坪으로 되어있는데 한 집이 한 55坪 정도를 占有하고 있고, 한 집은 45坪밖에 占有를 실질적으로 안해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은 50坪을 실제로 占有하고 있는데 測量을 해 보면 5坪은 이쪽 집으로 뺏겨버리고 저 쪽 집에서 또 5坪을 뺏겨서 그냥 짝 밀려나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차에 特別法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실체가 안 맞는 부분은 자기 占有 面積을 기준으로 해서 精算하도록 그렇게 特別法을 制定을 해서 運營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判事가 調整을 합니다, 가격 조정이라든지 해서 判事가 하면

그 判決의 효력과 같은 것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이 5年 規定으로 해서 다 없어지고, 지금도 아직 그렇게 정리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하자고 보니까 옆에 同意만 되면 다 되는데 지금 同意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몇 년 동안에 特別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자하는 그런 요청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法 없이 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올해도 보면 여섯 군데 했는데 지금 두 군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建議 말씀입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金信浩 委員님 요청하신 내용이 行政事務監査資料 자체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 다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오후에 준비해 주셔야 될 테니까 그러한 여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補充質疑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補充質疑인데요」 하는 委員 있음)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금 質疑를 하고, 質疑해서 오후에 答辯資料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金相男 委員님.

○金相男 委員; 저는 두 가지를 좀 질문할텐데 여기에 자료가 없으면 이따 보시고 答辯은 오후에 해 주십시오.

금년도 主要事業推進計劃에 보면, 92年度에 大統領指示事項으로 산 서울拘置所 買入……. 公園化 件으로 해서 427億원이 총 계상됐는데 금년에 15億원은 支拂을 했고 내년도에 166億원을 支拂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瑞草區廳 市

有地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서울拘置所가 政府것이었는데 이것을 大統領指示事項으로 해서 사백몇십억원의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사서 公園化시켰다, 이것은 自治制가 91年度부터 시행되었는데도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사실 서울시는 이것을 無償으로 받아서 公園화시키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費用이 들거든요. 이러한 돈이 왜 투입이 되도록 되었는지, 大統領指示事項이라고 해서 91年度부터 自治制가 되었는데도, 시행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 없는데 투자된 경위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3페이지에 보면 景福宮주위의 땅을 많이 샀어요, 92年度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사실 景福宮이라면 文化公報部에서 관리하는 文化財인데, 이 부근에 어떤 文化財에 어떤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돈하기 위해서 산 모양인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文化公報部에서 이것을 사야지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사냐 이거예요, 이것도 92年度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3年度에 보면, 약 27億원을 들여서 로마敎皇廳 주변을 또 샀어요. 이것은 敎皇廳의 大使館을 좀더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서울시가 서울시하고 직결되지 않는 데다가 과도한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94年度에 보면 약 14億원을 들여서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전시장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고, 거기에 組合員도 全國的인 조직이고 많은데 이것을 구태여 왜 꼭 서울시에서 14億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근거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좀 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더 비슷한 件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88年度 3月 31日 市有財産造成指針이 있습니다. 2해서 지금 陽川區가 갖고 있는 陽川管內에 공원이 6個가 있습니다. 곰달래공원 신월4공원, 한울공원, 오솔길공원, 독서공원, 신월공원 6個 공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 第26條 第1項에 보면 10만m<sup>2</sup> 이하는 自治區에다 移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10만m<sup>2</sup>이하의 공원인데 지금 현재 이관하지 않는 이유는 93年 1月 13日 新設된 條項에 의해서 "공원·녹지의 취득 및 조성 업무에 따른 비용은 第1項의 소유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93年 1月13日 이전에 이미 서울시가 갖고 있던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3年 1月 13日 新設된 소유 구분에 따른 부담, 이 條項을 적용시켜서 陽川區에다 이 공원을 移管 안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陽川區에서 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管理費는 다 부담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에서 市有財産造成指針에 의해서 당연히 自治區로 이관시켜야 될 공원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이관시키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 午後에 확실히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음 梁敬淑委員님.

○梁敬淑 委員; 저도 答辯을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質問을 하겠습니다.

瑞草洞 987番地 일대 서울시 廳舍敷地와 西小門 37番地 일

대 大法院 大檢察廳敷地의財産交換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市는 89年度 中區 西小門 大法院 大檢察廳敷地 7,300坪과 서울市 廳舍敷地였던 瑞草洞 2萬 9,000坪을 교환하기로 하고 89年度 3月 7日 1次 契約을 해서 그 이후에 11月 4日 追加契約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追加契約 締結者는 市長과 法務部長官, 大法院 行政處長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1年 9月 4日 4次 契約을 통해서相互 交換財産 明渡 및 差額支給 期限變更을 93年末에서 95年末까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때 財務局長께서는 鑑定價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의 鑑定價는 西小門敷地는 垡地가 坪當 645萬 원이었고, 建物 10餘 棟은 약 100億원, 이것은 처음 1次 契約 때 한 것입니다. 瑞草洞 市廳敷地 는 坪當 214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西小門 부지는 669億원이고 瑞草洞敷地 는 622億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財務局長께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2萬 9,000坪 對 서울市 所有市有地 市廳敷地 2萬 9,000坪을 7,300坪과 바꾸게 되었는지 그 교환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서울市는 48億원의 差額을 契約 만기일인 올해말 12月 31日까지 大法院과 大檢察廳에 支給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大法院에는 9億 5,000萬원을 支給을 해야 되고, 法務部에는 38億 1,000萬원을 支給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판단하기에는 이 교환은 서울市소유 땅의 넓이가 4배나 넓고, 坪當 價格도 그 때 당시에 89年度면 훨씬 더 비쌌습니다, 西小門 땅보다도 훨씬. 西小門땅은 그때 坪當 645萬원이었고, 瑞草洞 땅은 210萬원으로 評價를 했는데 이미

그 때는 江南에 투기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땅값이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엄청난 不等價 不公 正去來였다고 評價합니다.

당시에 瑞草洞 市廳會 敷地는 商業用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소한 그 때 당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所有主들을 제가 직접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당시에 부동산을 경영했던 부동산업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최소한 거래가격이 1,000萬원에서 2,000萬원에 거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89年度 瑞草洞市廳敷地는 大法院 大檢察廳舍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9年度 契約을 하자마자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서울시는 大法院 大檢察廳舍가 완공된 올해까지도 西小門廳舍의 賃貸料를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왜 받지 않는지 묻고 싶고, 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大法院이나 大檢察廳으로부터 89년부터 95년까지 7年間の 賃貸料 賃付料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賃貸料를 받을 때까지는 올해연말까지 支拂하게 되어 있는 48億원은 지불하지 말아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 交換財産에 대해서 서울시 財務를 담당하고 있는 財務局長은 문제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땅이 4배나 넓고 땅값도 실제 時勢 差額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된 서울시 瑞草洞 땅 부지 교환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또 문제점이 없다면 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이러한 財産交換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施行規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施行規則에 의하면 國有財産과 市有財産을 交換할 때에는 豫定價格 결정 자료로서 價格評定調書を 작성하여 公有財産審議會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價格評定調書에는 인근의 賣買實例調書を 첨부하게 되어 있고, 매매물건과 당해물건과의 위치를 표현한 도면, 公認鑑定機關의 鑑定調書, 公有財産審議會 會議錄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本委員에게 제출한 자료는 부속서류가 이런 매매가 실제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는 賣買實例調書 같은 것을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鑑定書 하나만 달랑 보냈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전화까지 해서 부속서류를 보내라고 몇 번씩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부속서류가 있다 없다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보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가 있다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왜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年 9月 8日 韓國鑑定院에 의해서 이 鑑定價가 결정이 되어서 價格鑑定調書を 냈는데 1989年 4月 1日부터 公示地價制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색별도를 통해서 鑑定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契約期間이 네 번이나 계약이 다시 체결이 되었고, 이랬다 하면 최소한 최종 계약을 한 91年 9월에 公示地價制가 도입이 된 그 때당시에 公示地價로 다시 한 번 公示地價를 책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韓國鑑定院에서 그 때 당시 鑑定한 鑑定書を 한번도 바꾸지 않고 公示地價를 다시 한 번 매겨보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鑑定書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제가 그 鑑定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鑑定書에는 본 件은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가 요청을 했습니다. 道路나, 垆地나 공원이 아주 많은 지목용도를 지목에 구애됨이 없이 일단 전체를 宅地로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전후면 등 가치를 달리 하나 일괄 平均價格으로 평가를 하라고 서울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鑑定結果가 나왔다고 鑑定書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시점은 귀 요청에 의하여 88年 9月 8日字로 鑑定을 했다고 이 감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왜 서울시가 道路나 垆地나 공원 등등 상가지역이었던 瑞草洞 부지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던 宅地로 일괄적으로 評價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鑑定書에 의해서 상가지역이 당시 去來價格이 1,000萬원, 2,000萬원 그 다음에 실제 소유자들은 몇 천 만 원이었다 라고 證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000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1,000萬원이었던 상가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왜 이렇게 鑑定을 낮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지 분명한 해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시에 상업용지로 최소한 1,000萬원에서 2,000萬원으로 실제로 賣買된 實例調書를 붙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붙였었고, 현재는 이 땅 값이 4,000萬원에서 坪當5,000萬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울시의 契約은 12月末에야 끝납니다. 그렇다라면 최소한 1,000萬원씩 그 때 당시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賣買實例調書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면 2萬 9,000坪이

2,900億원입니다. 그런데 620億원으로 契約이 됐었기 때문에 本委員이 평가하기에는 서울시가 적어도 2,300億원을 損害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交換 賣買差益 48億원을 올해 말에 支給하기 위해서 豫算에 책정을 해두고 있고 財務局은 오늘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大法院 大檢察廳은 서초동부지 청사를 신축하는 동안에 西小門 부지를 7年間이나 賃貸料도 전혀 내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서울시는 賃貸料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交換差額 48億원을 支給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交換差額 支給 이전에는 賃貸料를 소급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이 부분을 대처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檢察廳이나 또는 大法院, 또 中央政府까지 압력을 넣어서 서울시 땅을 빼앗아 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裁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분들 더 준비 답변 필요한 이런 질의를 해 주십시오.

李延義 委員님.

○李廷義 委員; 行政事務監查資料 2-1의 98페이지, 會計課長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定期預金 일별 신규내역이 금년 1月 1日부터 10月 31日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一般會計가 個月數別로 1個月짜리, 3個月짜리, 6個月짜리, 12個月짜리 있는데 1個月짜리, 3個月짜리, 6個月짜리는 支出 공백에 짜자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짜리는 당연히 연초에 歲出과 歲入에 의해서 갭이 생기는 것을 넣는 것으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會計年度가 1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會計課長이, 그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會計課長이 어떻게 해서 1월부터 3월, 4월, 5월까지 계속해서 일자별로 해서 1년짜리가 한 5·6,000億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는지 答辯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1個月짜리나 3個月짜리는 그 순간 순간 갭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計算에 의해서 되는데, 연초에 歲入과 歲出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남는 여유자금이 1년짜리로 들어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되어서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1년짜리가 1월부터 3월, 4월, 5월 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져서 5·6,000억원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오후에 첨부해서 답변을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94年度에 定期預金 科目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定期預金 科目이 나와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94年 1月 1일부터 94年 10月 31일까지 定期預金 일별 신규내역을 오후에 첨부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구요.

또 아울러서 公金預金이 95年度에 보니까 7월에 640億원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日하고 20日하고 末日에는 公金預金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1日, 20日, 末日 것을 뺀 나머지 한달에 한 22·3日, 일요일 빼면, 그래서 일일 평균잔액 현황을, 다 가져올 수는 없고 95年 1月 1일부터 10月 30일까지의 현황을 일일 평균잔액 현황을 빼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방 電算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財産管理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瑞草區廳을 얘기했는데 지금 替費地가 區廳에 瑞草區廳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앞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精算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區廳이나 또는 官公署가 쓰고 있는 내역이 精算되지 않은 상태에서 自治區에 登記가 되어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李延義 委員; 그런 현황이 있지요? 瑞草區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정산이 안 된 것이고,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自治區로 登記가 넘어가 버린 것이 있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李延義 委員; 있으면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세요, 지금 답변을 하지 말고.....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延義 委員; 없어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李延義 委員; 그러면 九老區廳과 九老警察署, 登記가 精算이 된 상태에서 넘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오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法的으로 넘어 갔어요. 88年 5月 6日 이전에 占有한 것은 전부다 法的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李延義 委員; 넘어갔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精算이 되어서 넘어갔는지 그냥 넘어갔는지.....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

에.....

○李廷義 委員; 지금 自治區하고 精算할 때 替費地가.....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九老區廳 말씀이지요?

○李廷義 委員; 네.

○委員長 文錫珍; 거기에 관련된 사항도 오후에 함께 준비해서.....

○李廷義 委員; 오후에 함께 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登記는 넘어갔는데 精算이 안된 상태에서 넘어가고 내부적으로 登記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鄭水華 委員님.

○鄭水華 委員; 鄭水華 委員입니다.

地方稅審議委員會異議申請分科委員會에서 審査 請求를 20件을 결정을 했는데, 20件이 다 棄却判定을 내렸습니다. 그 棄却判定 決定書を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申請은 204件 中에 取消 更正 합쳐서 16件만 이렇게 認容을 해 줬고, 또 訴訟쪽으로 가면 棄却率이 92.4 %에 이르고 있습니다. 民事訴訟에서 75%, 行政訴訟에서는 63%, 또 大法院에 가서는 오히려 行政訴訟 75件 中에 勝訴가 37件, 敗訴가 38件 이렇게 해서 敗訴率이 반절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적에 우리 異議申請分科委員會 쪽에서 判定하시고 審査를 하실 때 너무나 기존에 처리된 行政慣行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納稅者의 여러 가지 權益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을, 審議가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審査請求棄却判定決定書を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財務局長님께서 또 委員長으로 계시니까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또 요청 자료입니까?

네, 李亮漢委員長님.

○李亮漢 委員; 담배消費稅하고 綜土稅 관계를 閣議에서 保留되었다는데 그 서류, 낸 서류를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카피를 한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각 委員님들이 오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오전에 하지 못한 이러한 監査內容은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2時 30분에 다시 續開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54分 監査中止)

(14時 57分 監査繼續>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오전 監査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먼저 金相男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拘置所 자리를 427億원의 돈을 들여서 買入을 했는데 이 많은돈을 들여서 公園化를 할 필요와 投資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 國家에서 그것을 그냥 가져올 수는 없었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 서울拘置所 敷地는 87年 3月 19日 大統領께서 同 토지는 서울市에서 매입해서 市民을 위한 공원을 指示하라는 지시에 의거 우리 市에서 428억원을 투입해서 매입하여 현재 西大門 사적공원을 조성 市民利用에 공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투자 우선순위 상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원녹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형편에 있는 우리 市の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國家의 財産을 그냥 받아올 수 없는 것은 현재도 國家에서 그냥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서울市가 그냥 땅을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景福宮주위의 땅을 샀는데 이것은 文化財管理局이 그것을 따서 해야 될 문제이고 敎皇廳주변땅 매입도 과도한 투자가 아니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景福宮 및 로마敎皇廳 주변 토지는 인근에 靑瓦臺하고 景福宮이 있어서 財産權 행사가 많이 제한되어서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民願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 市에서는 84年度부터 買受 요구를 신청하는 사람들로 부터 土地 및 建物を 買受해 왔습니다. 그래서 84年度부터 93년까지 1萬 4,341坪의 垜地와 230棟의 건물을 한 360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왔습니다.



93年度부터 文民政府가 출범된 후에 規制事項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주민들의 買受要求도 줄어들었고 買受要求에 응하지도 않게 되어서 자동적으로 民願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集團民願을 보면 22회에 年191名の 利害關係인들이 다수 진정을 해 와서 그런 청와대 주변이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그 民願解消의 차원에서 이런 것을 사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4年度 中小企業中央會가 상당히 豫算上 여유도 있는데 왜 이런 展示場을 우리가 지어줬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文民政府 출범과 함께 中小企業育成을 위한 規制를 완화하고 제품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市에서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데크밑에다 1,185坪의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우리 市豫算을 들어서 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설하게 된 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産業經濟局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쪽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補充質問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하십시오.

○金相男 委員; 조금 전의 서울拘置所는 사실 원래 國有財産 아니었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네,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런데 사적공원이라고 그러면 文化財管理局이라든가 文化公報部에서 자기들이 조성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관리하는 책임만 맡는 것으로 해야지, 왜 그 땅을 427億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中央政府의 일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옛날 91年 이전에 地方自治制가 시작되

기 전에는 그 때야 中央政府나 서울이나 어디 地方의 道나 다 마찬가지로였다고 보지만, 아까 瑞草區廳. 얘기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91年度 후에 地方自治制가 시작된 후에 92年度부터 대금을 지불을 했거든요, 方針은 옛날에 정해졌지만. 그리고 내년도에도 166億원은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 427億 원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中央政府로부터 返還을 요구하든가 그래야 되고, 반환을 안해주면 관리를 못하겠다 그러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中央政府하고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서울市民의 稅金을 낭비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한 가지 景福宮周邊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靑瓦臺가 있어서 주변의 땅을 정리하고 길을 넓히고 하는데 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靑瓦臺는 中央政府이지 우리 서울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것을 민간이나 이런 데로부터 땅을 사서 靑瓦臺 주변의 길을 넓히고 하는데 서울市民의 돈을 썼다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宮井洞 로마敎皇廳 일대라고 그랬지만 사실 宮井洞 일대라고 보는데 옛날 10·26사건 후에 그 지역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의 일부는 정부 소유였고 일부는 민간소유의 땅을 사서 10·26사건의 현장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몽땅 서울시에서 사서 다 헐어내고 공원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더구나 92,93年度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財務局長께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

고, 中央政府가 자기들이 하지 못할 것, 하기 귀찮은 것, 해서 말썽 생길 것을 地方政府에 맡겨서, 더구나 우리 財政面에서도 어렵고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데다 돈 몇 백억원을 쓰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是正되어야 하고, 우리 執行部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93년도도 사실은 任命團體長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金相男 委員; 인정하시면 됐어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공감하겠습니다.

다음에 金相男委員님께서 陽川區 소재 공원 6個所가 都市公園條例에 의거 自治區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8年 3月 31日 市有財産調整指針에 의하면 地方自治가 실시된 88年 5月 1日 기준으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은 自治區에 이관하고, 미시설공원은 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同 公園들은 88年 5月 1日 현재 미시설된 근린공원에 의해서 陽川區에 이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93年 1月 13日 신설된 서울市都市公園條例 第26條에 의하면 공원의 소유 구분을 10m<sup>2</sup> 이상은 市소유, 그 미만은 區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同 規定에 의거 공원부지를 이관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規定의 의미는 93年 1月 13日 이후로는 10만m<sup>2</sup> 미만 공원은 區에서 부지를 취득해서 조성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 소급을 해서 市 소유의 공원부지까지 부지 이관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公園은 소유 문제보다는 관리 및 이용에 중점이 두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同敷地에 公園造成을 해서 市民들 이용에 공하면 되지 所有權까지 넘겨달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 規定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현재로는 이 부지 자체를 넘겨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相男 委員; 그 문제는 일단 여기 指針이나 條例에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陽川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管理費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네,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 공원의..... 저도 都市計劃局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委員들께서도 질문이 많으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네.

○金相男 委員; 이것은 그냥.....

○財務局長 權五虎; 다음에 梁敬淑 委員님께서서 西小門 大法院 大檢察廳 청사와 瑞草洞 市廳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는 왜 그 2萬 9,000坪하고 7,300坪을 바꿨느냐. 바꾼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市는 그리로 市廳을 옮길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유치와 준비로 인해서 서울市의 財政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市廳을 옮길 수가 없고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방침

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大法院하고 또 그쪽에서도 財産交換을 요청을 해와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한 財産을 우리가 그냥 집을 안 짓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收用을 당한 財産을 10年 이상 그 용도로 안할 때에는 還買를 하도록 그런 規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梁敬淑 委員; 5年이에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래서 그 還買權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還買權에 대한 訴訟이 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勝訴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 市의 필요도 있었고 政府側의 필요도 있어서 그 합의에 의해서 교환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賃貸料를, 사실 우리 땅은 그 사람들이 그냥 쓰면서 자기네들 땅도 그냥 쓰고, 그래서 우리가 賃貸料를 굳이 받아야 된다면 西小門에 있는 建物에 대한 賃貸料가 아니고 오히려 저 쪽의 땅에 대한 賃貸料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계약결정 당시에 계약서상으로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또 그 계약이 왜 賃貸料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公有財産管理 요령.....

○梁敬淑 委員; 아니, 잠깐.....

○委員長 文錫珍; 네, 말씀하세요.

○梁敬淑 委員;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더하겠습니다.

서울市가 계약할 때 瑞草洞 市廳舍 부지에 대한 賃貸料나

또는 여기 바꾼, 이 교환을 결정한 이후에 法院建物에 대한 賃貸料를 받겠다라는, 또는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契約書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 봐주세요. 契約書에 그것이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契約書を 읽어 봐 주세요.

○財務局長 權五虎; 擔當課長이 답변하겠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大法院 廳舍와 大檢察廳 廳舍의 財産은 현재까지도 國家財産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 되면 우리가 인수를 해서 서울市 財産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西小門에 있는 大檢察廳 大法院廳舍에 대해서는 使用料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瑞草洞 부지에 대해서는 契約書を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契約書 第4條 第2項에 보시면.....

○梁敬淑 委員; 언제 체결한 것이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제일 먼저 1次로 한 것입니다.

○梁敬淑 委員; 몇 월 며칠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89年 9月 7日.

○梁敬淑 委員; 89年 9月 7日是 계약한 적이 없어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래서.....

○梁敬淑 委員; 아니, 89年 9月 7日是 契約書を 작성한 적이 없다고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3月 7日인가요?

○梁敬淑 委員; 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래서 그 契約書 第4條 第2項에 보시면 廳舍 新築에 따른 부지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地方財政法 第88條 第2項에

의해서 國家나 市有財産이라 하더라도 國家가 사용을 할 경우,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無償使用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로 해서 이 規定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使用料에 대해서는 無償使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市도 90年 1月 1日부터 大法院 소유의 西小門別館 建物 4,238坪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大檢察廳 廳舍所管 건물도 194坪 이것을 無償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언제부터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90年 1月 1日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契約條件과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使用料를 賦課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이따가 묻겠습니다.

1989年 3月 7日 1次 계약을 했고, 1989年 11月 4日 追加 契約을 했습니다. 맞지요?

追加契約을 했는데, 이 때는 公示地價制度가 없었어요. 이 때는 없었고, 별색도에 의해서 토지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鑑定士에 의해서. 그래서 韓國鑑定院에서 鑑定을 했고, 89년에 韓國鑑定院에서 鑑定을 해서 감정결과가 서울시에서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나 택지나 공원이냐 할 것 없이 일괄택지로 평가를 하라라는 요청을 했어요. 여기 감정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맞습니다.

○梁敬淑 委員; 왜 그 때 당시에 道路나 垆地나 또 林野가 그 때 당시에 더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補償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林野나 이런데는 그냥 지으면 되기 때문에 더 비쌌는데 왜 林野라든지 道路라든지 公園이라든지 대지를 전부 다 일괄택지로 하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평가하라고 서울市에서 요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3月 7日, 89年度 4月 1日 公示地價制度가 공식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契約日은 89年 3月 7日이고, 2次 契約은 89年 11月 4日이고, 4次契約은 91年 9月 4日인데, 89年 3月 7日만, 1次 契約 때만 公示地價制度가 없어서 鑑定을 시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왜 公示地價制度가 4月 1日부터 실시가 됐는데도, 또 契約은 아직도 몇 번씩 앞으로도 계속체결이 되고 계약기간은 올해 12月 31日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公示地價에 대한 算定을 다시 한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첫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동부지 안에는 그 당시에 林野도 있었고, 道路도 있었고, 공원도 있었습니다. 委員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상업용지는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러면 그것을 垆地로, 宅地로 해서 이것을 평가를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은 현재 道路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임야상태에서 評價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서울市가 損害를 봅니다. 鑑定價格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林野로 한다



든지 道路로 한다 해서 평가를 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公用의 청사가 들어 설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의 택지로 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평가를 우리가 의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梁敬淑 委員; 그런데 이 鑑定을 한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梁敬淑 委員; 鑑定을 언제 했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이것은 교환이기 때문에 동시 鑑定입니다.

○梁敬淑 委員; 아니, 이 감정표에 의해서 鑑定을 했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렇지요.

○梁敬淑 委員; 감정표에 의해서 교환한 것 아닙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렇지요.

○梁敬淑 委員; 그 鑑定 언제 했습니까, 鑑定時點이 언제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鑑定 時點이 88年 9月 8日로.....

○梁敬淑 委員; 88년이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梁敬淑 委員; 그러면 契約은 89年 3月 7日에 하는데, 鑑定은 88年 9월에 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契約을 한 것은 89년에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왜 鑑定은 88년에 했고, 계약도 하기 전에 鑑定을 택지로 일괄적으로 算定을 하라고 요청까지 해서 이 전에, 그러니까 계약하기 1年은 안 되지만 契約하기 1

年 전에 鑑定을 요청해서 이 鑑定書에 의해서 契約한 이유가 뭐니까? 그러면 적어도 契約을 하기 전에 또는 契約을 전후해서 鑑定을 의뢰해서 객관적인 鑑定評價基準을 가지고 契約을 체결했어야 되고, 그런데 왜 이것을 1年 전에 鑑定을 요청하고 이것을 근거로 삼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財産交換을 한다 하는 것은 大法院이나 大檢察廳의 財産과 우리 서울시 財産을 交換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짜가 같아야 됩니다. 시점이 같아야 됩니다, 交換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大檢察廳 大法院의 交換 鑑定도 똑같이 했고 우리 財産도 똑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요, 契約은 이 鑑定 財産價額이 결정되기 전에는 契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3월에 우리가 契約을 하면서 그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협정서도 만들고 行政上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늦어진 것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최초 契約日인 3月 7日 이후에 4月 1日, 그러면 한 달도 안돼서 公示地價制度가 새로 생겼는데, 이 鑑定에 의해서만 평가한 이 기준을 끝까지, 지금까지 評價基準으로 삼는 이유가 뭐니까? 그리고 왜 다시 한 번 公示地價에 의한, 公示地價制度가 鑑定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나 또 韓國鑑定院의 어떤 鑑定士들이 鑑定을 하는 것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객관성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公示地價制度가 생겼고, 이것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라면 왜 한 번도 公示地價制度에

의해서 公示地價算定을 해 보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權; 먼저 公示地價는 90年度부터 施行을 했고요.....

○梁敬淑 委員; 89年度 4月 1日 制定을 했습니다, 法을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法만 그렇게 됐고, 施行은 90年度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梁敬淑 委員; 90년에 했던, 91년에 했던.....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우리가 財産을 교환을 한데는 그 당해 財産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財産價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정확한 財産價額을 算出하는 방법은 鑑定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현재 地方財政法에도 전부다 鑑定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鑑定을 해서 교환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니까 鑑定士에 의해서 鑑定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때까지는 별색도에 의해서 鑑定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公示地價制度로 해서 商業用地 뭐 이렇게 나눠져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왜 鑑定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公示地價制度에 의해서 鑑定을 하려는 노력을 안 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여러차례 契約을 이와 관련해서 네차례나 契約을 하는데 왜 그 동안, 그리고 아직도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그 때 88年 9월에 한 鑑定士가 한 鑑定만 객관적이고 공식적이라고 얘기를 계속 주장하느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 하자면 여기 그 때 당시에 鑑定을 했던 鑑定士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통화를 했는데, 30분 동안 거의 말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낮게 鑑定을 했는지, 왜 210萬원밖에 鑑定을 안했느냐. 그 때 당시에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최소한 1,000萬원에서 2,000萬원이었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210萬원 정도밖에 鑑定價格을 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 달라라고 하니까, 서울시가 택지로 일괄 평가해서 해 달라고 그러한 요청도 있었고, 또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기도 뭐하고 얼버무리고 30분 동안 거의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課長님하고 통화했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한 가지씩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러 가지하니까 다 기억할 수도 없고 하니까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89年度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公務員은 전혀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현재 이 織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득할 때에는 80年 9月 31日부터 82年 3月 31日까지 우리가 協議補償을 해 왔습니다. 수용법에 의해서 協議補償을 해왔는데, 그 때 補償을 할 때는 補償價額이 우리가 나간 것이 坪當 약 40萬원에서 50萬원까지 補償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補償價額이 114億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大法院과 大檢察廳하고 교환을했어요. 교환할 때에 88年 9月 8日 鑑定評價를 하면서 그 때 鑑定을 한 것이 瑞草洞부지가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坪當價格이.....

○梁敬淑 委員; 214萬원 돼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214萬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두고 보시면, 취득한 지가 6年 내지 8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4배 내지 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江南地域은 그당시는 거의 하나의 벌

판이다, 미개발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地方法院이라든지 서울地方檢察廳도 공사 중에 있었고 전혀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 주위에는 거의 꽃마을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가 누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鑑定評價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評價士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그 당시, 현재의 시점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환할 그 시점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그 땅 평가를 하면 안 되지요.

○梁敬淑 委員; 교환할 당시에 그랬고, 4·5,000萬원이에요, 거기서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지금 현 時點에서.....

○梁敬淑 委員; 아니, 89年 당시에 1,000萬원에서 2,000萬원이었던 말이에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현 시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梁敬淑 委員; 현 시점이 아니라 89年 당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언제 지금 현 시점..... 현 시점으로 하려면 4,000에서 5,000萬원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80년에 坪當 40萬원에서 50萬원으로 소유주들한테 수용을 했는데 그 때 소유주들을 내가 만나 봤습니다, 땅 소유주들을. 그리고 많은 裁判이 진행됐었지요? 그리고 아직도 裁判 繫留 中인 것이 많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좀 있습니다, 2件이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이 사건과 해서, 이 사람들의 裁判을 지금까지 10年 이상이 지났는데도, 15年이 지났는데도 계속 裁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瑞草洞이나 江南이 개발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70年代말부터 다 알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市廳舍를 짓는다라고 해서, 收用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瑞草洞 땅을 收用할 당시에 三成洞과 汝矣島 國會議事堂 땅 앞 등 市廳敷地로 收用을 한다고 사서는 市廳을 전혀 짓지 않고, 또 轉賣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땅 장사를 한 것이지요.

市廳 지을테니까 당신들 땅 收用하겠다 해서 사서 또 몇 년 있다가 다 팔아먹고, 땅값 올려서 팔아 먹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서울시를 믿을 수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용지매매계약서를 쓸때 서울시廳 敷地를 명기케 했다고 그래요. 서울시廳을 꼭 짓겠느냐, 짓겠다 이런 契約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廳舍 건립만을 위해서 條件附 契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때 80年에도 실제 땅 값은 200萬원에서 400萬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市廳을 짓는다고 收用을 한다고 하기에 지금 課長님이 말씀하신대로 40萬원에서 50萬원에 억울하지만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市廳舍를 짓는다라고 하니까 9年 동안, 적어도 이것이 89年 契約할 때가 3月 7日인데 89년까지 9年 동안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市廳을 짓는다더라라는 소문이 나면 그 지역 일대의 땅 값이 다 오릅니다.

예를 들면 龍山에 짓는다라고 하면 용산일대의 땅 값이 다 오르고, 汝矣島에 짓는다고 하면 汝矣島 주변의 땅 값이 다 오르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까 80年부터 市廳솜를 짓는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니까 이 주변 지역의 땅 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기붐도 막 붙고 그 쪽 땅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88年 9月까지 214萬원 정도의 坪當 4·50萬원 수용자체도 싼 값에 수용을 했지만 몇 년 사이에 몇 배를 올려서 서울시와 교환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때 당시의 거래액은 1,000萬원에서 2,000萬원이었다 이것입니다. 최소한이에요, 이것이에요. 비싼 땅은 더 비쌌고 조금 싼 데는 최소한 1,000萬원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감정표에 붙이게 되어 있는, 아까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施行規則이 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課長님과 내가 통화했었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梁敬淑 委員; 그럼 붙이게 되어 있는 豫定價格決定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에 붙이게 되어있는 인근의 賣買實例調書 그것을 왜 안 보내 주셨습니까, 자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우리가 公有…….

○梁敬淑 委員; 보내 달라고 내가 전화를 몇 번씩했었지요? 그런데 왜 안 보내줍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賣買實例價格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公有財産審議會議을 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하는 자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公有財産審議會議할때에는 거기의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의 주변 여건이라든지, 교통상황, 그리고 賣買實例價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참고를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公示地價가 있기 때문에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賣買實例價格調書 이것은 公審를 위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벌써 이미 5年, 이 서류를 보관하는 그 기간이 5年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전부다 파기처분이.....

○梁敬淑 委員; 賣買實例調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현재는 없지요.

○梁敬淑 委員; 없고, 또 당해 건물을 표시하는 어떤 도면도 없고요, 전혀 없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 당시 公有財産審議 委員會.....

○梁敬淑 委員; 그런데 문제는요, 課長 밑에 이것과 관련된 글이 어느 글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우리 財産總括系가.....

○梁敬淑 委員; 財産總括係, 財産總括係員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도면은 갖고 왔어요. 내가 도면 갖고 있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아니, 도면이야 언제든지, 도면이라면.....

○梁敬淑 委員; 그럼 다른 것은 다 보관하고 賣買實例調書라든지, 또 公有財産審議會 會議錄 같은 것만 다 없애 버렸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서류보관 기간이 5年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리고 2萬 9,000坪이나 되는 땅을 교환하면서 그런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그냥 廢棄處分을 다해 버렸어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 서류에 대해서는 5年입니다, 그것이.

○委員長 文錫珍; 그 서류보존 기간이 5年이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맞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우리가 財務局에 가서 실제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委員長 文錫珍; 중요한 契約에 관련된 서류가 5년이 지났다고 다 廢棄해 버리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세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없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없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委員長 文錫珍;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는 議會次元에서 따지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저는 이러한 어떤 서울시의 지금까지의 땅 장사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市廳舍를 몇 번씩 건립하겠다고 70年代 중반부터 해서 지금 수십 차례에 걸쳐서 몇 번씩 번복하면서 그 주변 땅 값만 올려놓고, 땅 팔아먹고, 또 조성했다가 또 팔아먹고 이런 땅 장사도 문제지만, 이렇게 3萬餘坪에 가까운 땅을 억울하게 大檢察廳이나 大法院 부지로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 公務員들 조차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위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빼앗겼다고, 참 억울하다.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서울시 關係公務員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갖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고 契約書라든지 또는 중요한 서류들을, 契約書는 아니지만 중요한 서류들을 廢棄處分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3萬坪이나 땅을 빼앗기고도 당당

하게 없앤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8億원을 앞으로 줘야 되는데 전혀 使用料 한 푼 안 받고 契約書 自體도 설령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문제지만, 또 契約을 할 때 당사자들의 사고방식도 문제지만 설령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또 不公正去來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算定을 해 봐야 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그 싸움도 벌여볼만한 것입니다. 그런 발상을 전혀 갖고있지 않은 서울 市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고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使用料나 賃貸料를 받지 않기로 했다든지,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지 使用料나 賃貸料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있지도 않아요.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使用料나 賃貸料를 받지 않는다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課長 혼자서 有權解釋할 수 있는 것입니까?

(「議事進行發言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오전 중에 질의하시고 답변 듣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行政事務監査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行政事務監査가 議會하고 執行部하고 말의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證據에 의해서 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를 여기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執行部에서도 앉아서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으면 직접 가져와서 委員 앞에 제출을 하십시오. 제출해서 그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질의하신 委員님들께서도 소기의 어떤 자기의 바

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그 방향만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서 다른 질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로 기술적인 면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梁敬淑 委員;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서울市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市가 올해말로 交換賣買差額 48億원을 支給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豫算으로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大法院이나 檢察廳은 瑞草洞敷地 廳舍를 신축하는 동안에 단 한 푼의 賃貸料나 貸付料를 내지도 않았고 西小門敷地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7年間の 使用料나 賃貸料나 貸付料를 서울市는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賃貸料나 使用料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오히려 大檢察廳이나 大法院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市가 交換差額 48億원을 支給하는 것은 本委員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交換差額을 支給 이전에, 交換差額을 支給하기 이전에 賃貸料나 貸付料나 使用料를 먼저 달라라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48億원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한다면 48億원을 주지않고 싸움을 하는, 그런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 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질의 자체를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다 찬동하고요. 그러나 일정하게 시간은 기술적으로 할애를 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金相男 委員님.

○金相男 委員; 우리 梁敬淑 委員께서 많은 자료 준비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鑑定도 해 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鑑定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鑑定價格에 의해서 市有地라든가 이런 것을 다 賣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鑑定價格에 의해서?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러니까 公示地價하고 鑑定價格은 용도가 다르고 개념이 다른데 公示地價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 1,000萬원 2,000萬원.....

○梁敬淑 委員; 公示地價대로.....

○金相男 委員;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梁敬淑 委員; 鑑定을 하라라는 것이지 鑑定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金相男 委員; 왜냐하면 지금 鑑定價格에 의해서 다 매각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鑑定價格은 특정한.....

○梁敬淑 委員; 鑑定價格이 나오는 것은.....

○金相男 委員; 鑑定價格이라는 것은 특정한 땅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고, 公示地價라는 것은 용도와 개념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執行部에서도.....

○梁敬淑 委員; 委員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왜 委員님이 나서서 반발을 하시는 것입니까?

○金相男 委員; 아니,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梁敬淑 委員; 議事進行發言만 하시면 됐지.....

○金相男 委員; 議事進行發言하잖아요.

○梁敬淑 委員; 執行部하고 委員하고 지금.....

○金相男 委員; 아니, 執行部에서도 확실히 얘기할 것은 얘기하라 이거예요. 확실히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지.....

○梁敬淑 委員; 監査를 하고 있는데 개념이 어떻다는 것을 왜  
委員님이 나서서 얘기하세요?

○金相男 委員; 執行部에서도 소신있게, 확실하게 확실한 것  
은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옛날 鑑定士를 전화로  
해서 물어봤다 이런 것은 말이지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저기요, 잠깐만이요.

○金相男 委員; 그래서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執行部에서도  
확실히 대답할.....

○梁敬淑 委員; 문제가 있는 것은 執行部에서 있는 것이  
지.....

○委員長 文錫珍; 梁委員님, 두 委員님은 發言權을 받아서 질  
의해 주십시오.

(「밖에 나가서 해요, 밖에」 하는 委員 있음)

○金相男 委員; 저는 發言權이 있어서 얘기했잖아요.

○委員長 文錫珍; 네, 梁委員님도 조금.....

○金相男 委員; 發言權 얻어서 얘기하는데.....

○梁敬淑 委員; 그것이 議事進行發言입니까?

○委員長 文錫珍; 서로 他委員에 대한 사항은 좀 자제해 주십  
시오.

○金相男 委員; 他委員의 사항이 아니고 事案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事案에 대해서. 왜 事案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해요?

○委員長 文錫珍; 저희가 委員으로서.....

○梁敬淑 委員; 여기가 토론장이예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  
게.....

○委員長 文錫珍; 잠깐만이요, 梁委員님.

○金相男 委員; 委員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委員長 文錫珍; 發言을 얻어서 하십시오.

○金相男 委員; 자꾸 남의 發言에 대해서 그렇게.....

○委員長 文錫珍; 他委員에 대한 發言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公務員 여러분께서 執行部에서 했다고 무조건 과거의 일을 주장하고, 변명하고, 두둔하고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建國以來 최대의 도둑인 盧泰愚가 大檢察廳에 拘束되기 전에 搜查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첫 감회인지 소회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發言이 뭔지 아십니까? 신문기사에 다 나왔잖아요. 이 大檢察廳인지 뭔지 하는 것 말이지요. 내가 준비해 줬는데 내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과거에 5·6共이라고 하는 잘못된 政權이 만들어 냈던 산물중에 하나 아십니까? 그러한 내용을 뻔히 알면서 서로간에 우리의 역사의 진실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실체의 문제를 알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데서 委員의 질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여전히 委員長으로서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契約이 금년 연말로 契約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다 완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관련된 서류가 5年 보존기한을 들어서 廢棄가 될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이 廢棄年限을 계산할 때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일 분명하게 財務局長책임하에서 그것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우

리 委員會에 가져오십시오. 우리 모든 委員들이 정밀검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분명히 서울市廳 敷地와 大檢察廳 大法院廳舍 敷地를 교환했을 당시에 관련된 모든 契約書,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鑑定書, 관련된 서류 모두 것을 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廢棄가 일부 되고 일부 안 되었으면 그러한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분명하게 내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議長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증언을 요청하는 이런 방식이라도 취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執行部 입장에서라도 市에서 과거에 해 왔다고 해서 그러한 연속성 선상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당부드리는 것이 民選時代를 열면서 우리 委員會 뿐만 아니라 執行部에서도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항상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여기서 서로 밝혀내고 잘못된 관행 제도에 대해서는 고쳐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收監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執行部 側에 있어서의 시각도 이제는 民選市長과 함께 변화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委員들께서도 목적하시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너무 한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委員님들 질의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자제해 주시고, 또 他委員과 서로 견해가 달라도 좀 참고 자제해 주시기를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다른 委員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아까 질의한 部分에서 답변이 덜 된.....

○委員長 文錫珍;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까?

네, 答辯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李延義 委員님께서 94年 1月부터 12月까지 12個月짜리 定期預金한 內역하고, 95年 1月부터 10月末까지 日日 公金 殘高內譯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答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鄭水華 委員님께서 地方稅 異議申請 提起를 하면서 우리가 認容率은 상당히 적는데 大法院에 가서 敗訴率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審議를 시민의 편에서 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異議申請審議委員會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議決機關이 아니고 審議機關이기 때문에 內務部의 각종 지침이라든지 해석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많이 나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한계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大法院에 가서 우리가 棄却 결정한 부분도 敗訴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文民時代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大法院判例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조금 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審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亮漢 委員님께서 담배消費稅하고 綜合土地稅의 교환에 대한 서울市가 제출한 서류를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서울市는 이것을 교환해 달라는 建議書를 냈고, 內務部가 國務會議에 案件으로 제출한 것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黃仁明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仁明 委員; 黃仁明입니다.

아까 同僚 金信浩 委員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추가 질문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地籍問題, 不適合地域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地籍 不適合地域이 생긴 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책자를 보니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自治團體別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6·25이후부터 無許可 建物이 집단적으로 생기고 그러면서 현 地籍하고 建物하고 다 틀려서 생겼고, 또 서류를 보니까 60年代, 70年代 이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생겼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고 서로 建築主와 垜地主의 利害關係로 해서 아마 해당 지역에서는 20年 동안 민원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新聞을 보니까 特別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民事訴訟法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치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소유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同意를 얻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과반수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제가……」 하는 關係公務員있음)

답변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財務局長 權五虎; 우리 地籍 專門家이신 課長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復鎭; 地籍課長입니다.

사실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內 不適合地가 約 5,000餘 筆地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 筆地數에는 120

萬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숫자라고 하지만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5,000餘 筆地의 소유자들로서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業務報告時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옛날 6.25때에 公簿가 소실이 되어서 다시 만들다가 뭐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특히 60年代에 무질서한 소위 난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변두리의 林野나 農耕地가 그대로 住宅地가 되면서, 마구 開發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所有權 概念이 그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앎기 때문에, 우선 집장사입장에서 집을 지어서 팔다보니까 마구 좀 잘못되는 경향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된 것은 한 5,000餘 筆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해결하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市中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昌信洞이라든가 黑石洞, 또 千戶洞, 吉洞 이런 데 몇 개地區는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일단 저희가 測量까지도 완료해서 약1,500필지에 대해서는 測量을 전부 완료를 해서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地籍法에 의했을 때에는 개인의 所有權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려면. 증감이 생길 때에는 利害關係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增 되는 사람은 도장을 찍을지언정 減 되는 사람은 면적이 다만 얼마라도 損害가 된다 하면 同意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체에서 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현재 그것

을 精算을 하는 방법으로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精算을 하다보면 돈을 내는 사람과 또 돈을 받는 사람간에 또 利害關係가 서로 상충이 됩니다. 많이 받으려는 사람과 적게 내려는 사람과, 이러다보니까 現 法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同意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추진실적이 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區廳에서 소유자를 쫓아다니면서 반상회에 설득도 하고 회보도 돌리면서 PR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不知何歲月이 되지 않겠느냐, 도저히 할 방법이 없겠다 이래서 뭔가 이것은 特別法을 만들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特別法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特別法도 물론 저희가 그것이 꼭 만능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特別法의 내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의 1/2同意라는 것은 우선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 최소한 소유자의 반 이상의 同意는 얻어서 사업구역을 일단 지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그 다음에 사업구역을 지정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測量도 해야 되겠고, 나중에 경계에 따른 무슨 조정도 있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의 증감에 따른 清算도 있어야 되겠고, 또 清算을 하려면 그러한 清算委員會가 또 필요하고, 또 清算委員會의 구성은 判事를 委員長으로 하고 최소한의 그 주민의 과반수가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를 行政官廳이나 또는 토지의 專門家들이 委員會에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지역마다 委員會를 구성해서

委員會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소유자를 설득을 시켜가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官에서 지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 가면서 주민참여에 의해서 서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의 委員會를 좀 구성해 보자. 그 다음에 거기 清算을 할 때에도 鑑定評價機關을 통해서 공정하게 鑑定을 한 다음에 2個 機關 이상의 鑑定評價를 받아서 그 平均價額으로 해서 精算을 하고 서로 돈을 내고 주고받는 하는 방법, 이런것이 法律的으로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法案을, 案을 만들어서 지난 8日頃에 內務部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그러면 그간에 예를 들어서 토지의 증감 부분에 있어서 利害關係가 상치하는데 그런 노력을 官 주도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地籍課長 金復鎭;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이나마 해결을 한 것입니다.

○黃仁明 委員; 그럴 때 公示地價 정도로, 또 토지가 모자라는 부분 그런 것을 교환하는 시도를 해봤나요?

○地籍課長 金復鎭; 公示地價는, 저희가 公示地價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公示地價는 公務員이 약식으로 대량적인 토지에 대해서 鑑定評價하는 약식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行政官廳에서 필요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公示地價를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所有權에 대한 補償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專門家の 鑑定評價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黃仁明 委員;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地籍課長 金復鎭; 네.

○黃仁明 委員;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실 때 등록사항 정정하고……. 그 내용이 뭐니까? 縮尺…….

○地籍課長 金復鎭; 縮尺變更하고요.

○黃仁明 委員; 네, 그것하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地籍課長 金復鎭; 測量 不符合地라고 한다면 비단 測量만不料合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地目이 대지에 될 것이 土地臺帳에 田으로 올라갔다든가, 또는 소유자가 誤記가 생겨서 홍길동을 잘못 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을 法的인 용어로 登錄事項訂正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오기 정정도 거기에 해당되고, 조금씩 잘못된 것도 있고, 또한 아까와 같이 測量이 잘못되어서 不符合地 되는 것도 역시 등록사항정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縮尺變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별로 그런 사례가 없습시다만, 옛날에 區劃整理事業을 하다보면 延喜洞이나 敦岩洞 倭政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시다만, 區劃整理事業을 하면 그 일대를 전부 다 區劃整理事業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기존 주택지가 좀더 區劃整理事業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하는 지역을 除斥地라고 그래서, 法律的으로. 除斥地라고 해서 남겨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은 새로 측량을 하지 않고 옛날 지역의 도면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區劃整理를 새로 하는 지역은 전부 측량을 하면서 대축척으로 해서 1/500이나 1/600로 해 놓았는데 除斥된 부분은 옛날 도면으로 1/1200로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縮尺이 같은 단지내에서 꼭 가운데만 1/1200로 옛날 縮尺으로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縮尺을 1/1200도면의 縮尺을 1/600로 바꾸어서 등록하자 이런 것을 法律用語로 縮尺變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그러면 特別法 制定의 주요골자가 뭔가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憲法訴願을 한다든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시 방침은?

○地籍課長 金復鎭; 물론 이제 特別法의 주요 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事業區域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 표시하는 방법, 또 측량하는 방법, 나중에 所有者의 面積 增減에 따른 清算에 관한 방법, 또 地籍整理의 방법, 또 마지막의 囑託登記까지 내주는 방법, 이런 일련의 절차를 가지고서 法案을 만드는 것입니다.

憲法訴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과적으로 憲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도의 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黃仁明 委員; 그럼 強制 規定은 없는 모양이네요, 그럼?

○地籍課長 金復鎭; 強制 規定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만일의 경우 그 소유자가 정 안 될 때에는, 同意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委員會에서 일종의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會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까지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黃仁明 委員;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清算은 어떤 기준으로 清算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다면?

○地籍課長 金復鎭; 아까 말씀드린대로 鑑定 評價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鑑定評價요?

○地籍課長 金復鎭; 네.

○黃仁明 委員;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黃委員님 제가 하나만 보충으로, 아까 제가 그런 法을 전에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公有地分割에 關한 特例法인데 여기에도 그런 취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判事가 委員長을 해서 거기서 議決이 된 것으로 과반수이상인가 그런 議決로 되었기 때문에 判決의 효력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黃仁明 委員; 아까 判事가 화해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아까 보고하실 때.

○財務局長 權五虎;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하면 判決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수의 과반수 이상이 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땅을 찾기 위한 그런 판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判決效力을 가지고 강제로 하는 그런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局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지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웬만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法을 만들기 이전에.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城北區廳에서 삼선교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黃仁明 委員; 네.

○財務局長 權五虎;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고 심지어 어느 辯護士분이 반대를 해서 제가 辯護士분 한테까지 설득을 시

켜서 아, 그런 것이냐고, 그럼 하겠다고 해서 한 일도 있는데, 몇 몇 사람이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 이 쪽 땅이 이 쪽으로 전부 밀렸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쪽 땅은, 내 땅은 다른 사람이 먹고 있고 또 자기 땅은 이 쪽으로 밀려서 남의 땅을 먹고 있어서 두 사람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 하나만 반대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吉音洞 쪽에 12筆地가 그런 것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다른 데 다 同意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주면 아마 상당히 많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그럼 再開發이나 이런 것을 할때 85%인가 同意를 받으면 되지요, 그것이. 그런 것이 있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黃仁明 委員; 거기에 準用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 그것은 그 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法이 없으면 때문에 그것을 準用하거나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法이 없으면 설사 95%가 同意되더라도 한 사람만 반대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黃仁明 委員;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소수가 假處分한다든지 이런 法律行爲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런 데에서?

○財務局長 權五虎; 假處分이 아니고 자기가 同意를 안해 주니까.....

○黃仁明 委員; 시행 자체를 못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시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黃仁明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李亮漢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우리 財務局에서 보고하신 7페이지 竝차 自動車稅 減免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市稅減免條例 第15條에 의한 減免에 전적으로 同意를 합니다. 이 法 자체가 당초 만들어졌을 때 國防的인 문제에서 自動車動員수에 의해서 竝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減免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市稅, 區廳에 내려준 第15條 減免條例 中에 사권제한의 土地 減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稅法 第234條의12規定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음 각호에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綜合所得稅를 減免한다. 그런데 그 중에 減免 6號 중에서는 大統領이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늪지, 사적지, 묘지 및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받아서 오는 施行令 第194條의7에 보면 第234條第12項 6號에 의해서 大統領이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늪지에 대해서는 각호에서 다음과 같다해서 減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市가 공시하고 있는 私有財産에 대한 토지,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市가 소유하고 있는 土地使用料를 받고 公園河川使用料를 받습니다, 稅外收入으로. 개인이 가진 土地를 제한을 해 두고, 所有權을 制限을 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第15條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公共施設都市計劃法 第2條 第1項 및 14號 規定에 의하여 공공성인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第13條 規定에 의하여 50%를 輕減한다고 했습니다. 50%를 輕減하는 것이 아니고 50%를 課稅한다는 말을 아주 이쁘게 쓰니까 輕減한다고 표시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서울市가 개인 財産을 사용하고 있으면, 서울市 財産을 개인이 사용할 때에는 돈을 받고 개인의 땅을 도

로로 공시해서 쓸 때에는 綜合土地稅를 50%課稅하고 있어요.

그러나 地方稅法에서도 國家가 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減免을 하고 있어요, 非課稅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國家보다도 더 센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가 公示하는 것에 대해서는 課稅를 하고 國家가 하면 안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왕이면 租稅의 廢棄라든지 할 때 이 條例 부분도 改正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個人 私有財産에 대해서 공원이나 하천도로로 공시한 명세서가 있으면 그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이와 관련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專門的인 것이 되어서 우리 課長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稅政課長 李君杓; 稅政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私權 制限土地에 대하여 50% 綜土稅 減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民願이 많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廳 같은 부서내에서도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전면 減免이 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수없이 받았고, 또 이것이 政府에서 지금 하고 있는 行政刷新委員會에도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減免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기본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금방하면 또 문제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20年 동안 안된 것은 50%, 거기서 25年 된 것은 60%, 30年

까지해서 이렇게...... 그래서 20%정도는 課稅가 되게 명목은 유지되어야지 하는 案도 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公園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이런 토지도 일단은 收用을 하고 그럴 때에는 그 補償額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所有權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에 대한 保有課稅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는 區廳에다 최근에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몇 %를 減免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25個 區廳 中에서 18個 區廳이 현행대로 놔달라고 해왔습니다. 먼저 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民選區廳長이 아니었을 적에는 전부 이것을 減免해 달라고, 민원이 많다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대로 놔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난 주에 2주 동안 監査院 監査를 받았습니다. 그 監査에서 이번 監査는 적발 監査가 아니라 뭔가 시민을 위해서 制度改善을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착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분들이. 그래서 이 事案들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시에서 代案을 내라 그래서 저희는 일단공원으로 완전히 편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課稅를 양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開陳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前期 委員會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던 事案입니다. 그래서 政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심층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李亮漢 委員; 지금 各 區廳에서는 綜合土地稅가 자기 稅收이기 때문에.....

○稅政課長 李君杓; 그렇습니다.

○李亮漢 委員; 자기 稅收를 올리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만약

에 자기동네 아니면 아직도 담배消費稅하고 바꾸면 까자고 그러겠지요, 그지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稅政課長 李君約; 그래서 그.....

○李亮漢 委員; 쉽게 얘기하면 자기..... 그러니까 稅金을 매기든지 우리가 徵收를 하든지간에 확실성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규칙이란 것이 있어요, 규칙이. 규칙없이 옛장사 옛주무르듯이 기분 좋으면 이것은 내 것이고 기분 나쁘면 네 것이고 이런 식으로, 특히 稅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稅金을 정하는, 우리 條例로 정할수 있는 범위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稅政課長 李君杓; 네.

○李亮漢 委員; 法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稅金은 그래서 이왕이면 糞차를 廢棄하고 그런 획기적인 사고발상을 하셨으면 우리 財政法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예를 하나 든 겁니다.

○稅政課長 李君杓; 네.

○李亮漢 委員; 財政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의해 어쨌든간에 廢棄할 條項이 많아요, 廢棄. 廢棄할 條項이 많으면 그 때 필요했던 것이 지금 필요없다고 하면 廢棄하고 新設할 수 있으면 新設해서 좋은 法案을 만들어야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네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稅政課長 李君杓;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주로 稅金에 대한 이러한 질의가 많이 계신데, 稅金 中에서도 우리가 그 동안에는 우리 市稅滯納에 대해서 여러 業務報告를 듣는 과정 중에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

다. 오늘 주신 監査資料에 의하면 開發負擔金에 대한 滯納資料가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開發負擔金, II-1 143쪽을 보면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직장조합 외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31億 4,800萬 원이 지금 滯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94年度인데 어떻게 아직도 계속 滯納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行政事務監査資料 II-1에 143 쪽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을 하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地籍課長 金復鎭; 地籍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委員님들께서 開發負擔金額의 滯納事項을 밝혀달라고 하셔서, 사실 이 開發負擔金 賦課徵收權者는 區廳長입니다. 그런데 委員님들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시고 연도별로 滯納事項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滯納事由와 향후 대책을 그러서 우리가 이 양식에 의해서 지금 각 區廳에 다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하나를 저희가 아직까지 따져가면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弘濟洞이기 때문에 西大門區廳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에서 합동으로 16個 조합이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滯納事由가 개시시점 地價가 부적정하다 이랬는데 이것이 과거에 法이 개시시점을 어느 경우에는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또 公示地價가 아니고서도 예를 들어서 取得價額이 있을 때는 取得價額을 인정한다든가, 또는 鑑定評價를 제출을 하면 評價書를 인정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옛날에 조금씩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아마 訴訟이 提起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확실한 것을 더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西大門區廳으로 하여금 내용을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저희 市에서 직접 취급을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현재로써는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단순히 자료만 그냥 집계했다는 얘기.....

○地籍課長 金復鎭; 네, 그렇습니다. 區廳長이 전부 賦課徵收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相男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相男 委員; 자료 377페이지에 보면, 物品管理轉換 내역에 보면 맨 끝에서 두번째에 보면 이동식 아스콘프렌트 외 1종을 忠淸北道 道路管理事業所로 管理轉換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전부다 서울市 管轄 管內에 각 부서별로 管理轉換을 했는데 이것만 아주 특별히 忠淸北道 道路管理事業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金額도 3億 3,000餘 萬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忠淸北道로 갔는지 알고 싶고, 또 物品管理轉換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느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會計課長 林綵瑾; 이것은 불용물품인데요, 公共機關에는 상호 無償으로 管理轉換을 할 수 있도록 物品管理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느 事業所에서 쓰다가 이 사업이.....

이 3億 3,000萬원이라고 하는 것은 5年이고, 6年이고, 7年 전이고 최초로 그 당시에 新品으로 살 때 그 取得價格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이것이 장부상 가격인데 이것을 우리 事業

所에서 쓰다가 이제 목적 달성을 다하고 이것을 못쓰게 되었을 때 이것을 全 機關에다, 官報에다가 이 물품이 필요한 부서가 있나 없나를 조회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忠淸道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아직은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아주 현재 工事を 하는데 쓰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地方에서는 아직 財源이 부족하니까 좋은 기계는 못 사도 아직 이런 것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청을 내면, 地方自治團體間 혹은 公共機關間에는 無償으로 서로 讓與해 주고 서로 移管시켜주는 物品管理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委員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하는 委員있음)

네, 李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公園用地를 지정해서 있는 우리 서울시 私有財産 公園用地에 대해서 補償方法을 대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補償을 해 주는 방법이 民間人이 참석하여 민간주체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개발권을 양도하는 방법, 공원으로 지정하고 제한된 사유권을 증권으로 보상 받아 이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도 있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공원내지는 소유권자에게 수익할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환지하는 방식, 國·公有地와 교환하는 방식, 補償額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 토지를 소유권 변동 없이 임대료를 주는 방법,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서울시가 임의로 공원용지나 도로를 썼다하더라도, 이제는 民選이 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쟁점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고 꼭 民間人이 서울시에 대고 꼭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

이외에 개발하는 방법이 한 여섯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이 부분은 公園課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만 제가 市政企劃團이나 이런 데서 지금 듣고 있는 쪽을 가지고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기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림랜드 같은 것, 용마공원 같은 것, 江西에도 1件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公園法에 맞게 公園開發計劃을 해서 할 때에는 본인이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센티브 방법이라든지, 환지방법, 채권보상 방법, 임대료 지급 방법 등은 지금 서울시가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 방법이라든지, 채권보상 방법을 아주 극한적으로는 한번 논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보상 방법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이 생기면 이것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환지 방법이라든지, 개발 전 양도나 인센티브 방법은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市有 貸付財産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네.

○委員長 文錫珍; 별책으로 市有財産 賃貸 및 賣却現況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러한 市有 대부재산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를테면 그 42쪽에 나와 있는 城東區의 사용용도를 테니스장으로 준 것이 있는데, 테니스장으로 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萬원 정도, 연간 500萬원정도 賃貸料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은 같이 생깁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東部病院이나 그 뒤에 넘겨보면 西大門病院 같은 데 靈安室에 대한 임대는 전부 다 韓國報勳福祉公團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금액의 기준에 적정성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임대해 줄 때 어떤 公開競爭入札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隨意契約만 하는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죽 보면 주로 賃貸해 간 측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과거에 얘기했던 官邊團體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이런 데들이 많아요. 市友會나 바르게살기협회나 경찰공제회나 이런 데들이 많은데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擔當課長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財産管理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市有財産을 貸付를 할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貸付하는 것을 자제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 지금까지 市有財産이라든지 公有財産을 점유를 하게 되면 既得權을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市有財産의 토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貸付를 하는 것을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아닌,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건물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貸付를 해 왔습니다.

중전의 城東區의 貸付料는, 먼저 區에서 貸付를 할 경우에는 그 貸付額 전액의 70%는 市로 가져오고 30%는 區에서 區

收入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핏보기에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70%만 가져온, 市費로 가져온 70%를 기록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貸付料 책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公示地價의 5%, 2.5% 내지 5%를 賦課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5% 내지 5%를 賦課를 하는데 財産算定基準은 鑑定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業者選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部署의 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업체 또는 개인을 선정해서 賦課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말미에 형편에 따라서, 물론 公開競爭할 수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貸付者명단을 죽 보면 과연 공정하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히 病院에 대한 부분들은 韓國報勳福祉公團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또 이러한 價格에 대한 적정성, 아까도 鑑定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鑑定이 적정한 것인지, 실제로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주변의 땅값 내지는 그 주변의 정상적인 賃貸料 이러한 것을 견주어서 판단하는 이런 기초를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르테면 이것이 기준상으로, 예를 들어서 公示地價의 2.5%입니다, 이렇게 해서 監査에 그저 피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에 市金庫 行政事務調査한 이유도 市金庫에 대한 收益率이 낮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稅金을 부과하거나 使用料를

올릴것이 아니라 地自體인 市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市有 貸付財産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그런 規定에 의해서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현실적인 가격에 맞도록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貸付를 해줄 때 경쟁적으로 해주는 방식이 가장 마땅한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行政事務監査를 하는 것이지만 내년도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때 더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金相男 委員; 이번에 저희들 지역 사항입니다만, 木2洞 522번지 市有地, 그 替費地에 대한 再建築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民願에 의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市有財産을 賣却할 때 鑑定을 해서 鑑定價格으로 賣却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鑑定을 複數鑑定을 했느냐 하니까 한 군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13條 鑑定士 또는 鑑定法人하고 契約이 되어 있어서 13個가 돌아가면서 鑑定을 해서 複數鑑定 또는 單獨鑑定을 해서 그 鑑定價格에 의해서 賣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

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40世帶가 살다가 23年 전에 使用許可를 받아서 시민아파트를 지어서 살다가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 40世帶가 그대로 再建築을 하기 위해서 市有地를 사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23年 동안 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있어야 되겠지만 鑑定自體도 單獨鑑定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鑑定士 보면 한 사람 내보냅니다, 그냥. 한 사람 내보내서,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것은 적당히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鑑定の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複數鑑定을 해서, 거기서 複數鑑定을 했는데 너무 두 鑑定書의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는 또 再鑑定을 시킨다든가, 그 差額이 어느 정도 기준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算術平均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鑑定에 대한 정확도를 기하는 그러한 制度的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13個 鑑定法人 또는 鑑定士의 선정기준은 어떤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民願의 소지가 있고, 또 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鑑定問題, 이것을 賣却할때도 그렇고 使用料 徵收할 때도 그런데 鑑定問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再檢討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먼저 鑑定을 1個 機關에 하는 것보다 2個 機關에 할 경우에는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토지에 대해서도 民願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의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까지 2週間 監査院 監査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도 監査하는

制度改書 팀에서 지금 國有地는 2個 機關에 複數鑑定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地方財政法에서 1個 機關에 鑑定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2個 機關에 鑑定을 하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內務部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鑑定評價機關이 13個 機關에다 우리가 鑑定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鑑定評價를 가진 그 회사. 評價法人의 會社가 鑑定評價士를 가진 수에 比例해서 물량을 현재 맡기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휴식을 위해서 잠깐 停會하고 그 다음에 續開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30分 監查中止)

(16時 59分 監查繼續)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朴南植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南植 委員; 朴南植 委員입니다.

우리 서울市民이 성실하게 納稅를 했을 경우에 그 納稅者의 보호,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우리 執行部에서 아셔야 할 텐데,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를 갔더니 綜土稅 독촉장이 나왔어요, 1年 2個月만에. 그 안에는 전혀 一言半句의 전화나 또는 독촉에 대한 서신이 일절 없었는데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이루었어요. 야. 이거 내가 안 냈나, 稅金을.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찾나, 아무

리 찾아봐도 料金 領收證이 없어요. 필요했을 때 어느 銀行에 다 냈는지도 모르겠고, 낸 것은 분명한데 어느 銀行에 냈는지도 모르겠고 이랬을 때 서울市民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낄 것인가, 만약에 이런 일이 종종 많이 있을텐데,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서 아침에 부랴부랴, 그 領收證이 나한테 없고 다른 데 가 있어서 領收證을.....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 결과, 93年 10月이지요.

그래서 25日 淸潭洞 조흥은행에다 냈는데 그 稅金에, 綜土稅에 한 두어 번 過怠料를 곱배기로 해 냈어요.

만약에 稅金 領收證을 못 찾고 이랬을 경우에는 지난 稅金 나온 것에다 이번에 또 稅金을 낸..... 제가 억울하게 문다고 보면 過怠料까지 엄청난 稅金을 물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公務員들이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할 때 기가 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화가 나서 관할 區廳의 담당자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바빠서 전화를 못받고 있었고, 어느 여직원이 받으면서 그것은 그냥 전화로만 알려주세요, 아주 쉬운 얘기로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財務局長께서는 이런 문제의 발생이 아마 빈번히 그 동안에 있었으리라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朴南植 委員님이 실제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각종 稅金 및 領收證에 대한 개인이 5年間 보관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領收證을 분실하면 또 滯納했다고 해서 나오면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 실제로는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公課金 같은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낸 告知書는 앞서서까지의 모든 것이 다 納付된 것을 證明하고, 그래서 보관은 2回分만 보관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의 표시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制度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곁들여서 한 번 묻습니다.

○朴南植 委員; 그래서 얼른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 서울市가 어찌면 過怠料를 두 번 세 번씩 물리기 위해서 1年 2個月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할 때 어찌면 사업성으로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벌써 작년 10월이면 작년 12月 안에 체납에 대한 것을 알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리지도 않고 이제까지 있다가 1年 2個月만에 처음으로, 사실 그런 일이 없어요, 독촉장 처음 온 거예요, 1年 2個月만에.

○委員長 文錫珍; 답변 듣기 전에 李亮漢 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우리 國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稅金을 過誤納을 했든지 잘못냈다고 그러면 部署長이 職權訂正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市稅 입장에서는 간혹 職權訂正의 制度가 잘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특히 住民稅라든지 市稅는 근무지 소속에서 내는..... 鍾路區廳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 鍾路 區廳에 내고 총할 납부 연말에는 江南에 있으면 江南에서 精算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鍾路區廳에서 한 것을 江南區廳에서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이것을. 지금은 컴퓨터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朴南植 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區廳끼리 일어나는 문제, 또 免許稅도 그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納付한 領收證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 근거

서류를 대면 고쳐줘야 되는데 市 稅務公務員들이 대체적으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라도 區廳長에게 職權訂正權을 준 다든지, 局長에게 職權訂正權을 준 다든지 해서 그 사실이 명확하면 是正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所管 稅務署에 가서 확인서를 끊어오라, 우리는 컴퓨터로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은 그 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도 독자적인 自治制의 서울시라면 自治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一般 行政部署에는 請求權은 附與해 놓고 그 請求權에 대해서, 執行權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할 요건이 없어요. 請求權은 法律上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대집행권 같은 것을 보면, 실제에 의하면 高法에 가서 신청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좀 시민의 쪽에서 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朴南植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편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우리 朴南植 委員께서 직접 겪으셨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李海瓚 副市長님 덕에 직접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가서 꾸지람도 듣고, 또 그 대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銀行에서 실질적으로 납부가 됐는데 區廳으로 그것이 안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것이 다른 區로 분류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區廳이나 執行部 쪽에서 실질적으로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稅金을 냈는데 안낸 것으로 돼 있는데 대해서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行政의 문제점인데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領收證을 가지고 갔는데도 또 정리를 바로 할 수가 없는이유는 滯納額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못받은 돈이 사 천몇백원 그랬는데, 사천삼백몇억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 滯納原簿에 있는 이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領收證만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돈을 받아들일 것은 많은데 위의 滯納者는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정리를 해주지 안들어오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領收證이 오면 사실은 그 銀行에 가서 이것을 어디로 納付를 했느냐, 그래서 그 경로를 따라서 그 돈이 그러면 다른 區廳으로 갔으면 다른 區廳에 그 돈이 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精算받은 후에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은 바로 이 電算化가 미흡했기 때문에 첫째로 상당히 찾기도 거북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과거에 滯納이 있을 경우에 같은 稅目的 告知書를 낼 때 그 滯納額도 같이 해서 그것이 納付가 되면 최종 領收證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전의 滯納도 다 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制度를 지금 전체 稅目은 다 못하고 상당한 수의 稅目を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課長이 다시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미정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區廳에다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南植 委員; 그러니까 95年 12月까지 저도 滯納者로 명단이 지금올라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財務局長 權五虎; 아마 그럴 것입니다.

○朴南植 委員;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요?

區에서, 관할 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제 名譽를 훼손시켜 냈으니깐 명예회복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지, 이제.

○財務局長 權五虎;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무착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市稅事務所設置 문제도, 이것이 왜 그럼 區廳으로 꼭 분류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區의 徵收-交付金 문제가 또 딸려 있습니다. 돈이 그 區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3%의 徵收-交付金を 주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줄이지도 못하는데, 이제 市 稅事務所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어떤 한 군데에서도, 전체 市歲入으로 다 들어오는 부분, 한 군데에서도 그런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을 한번 내려서 다시 채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領收證制度를 우리 課長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稅務指導課長 金換吉; 稅務指導課長입니다.

우선 朴南植委員님께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朴南植 委員;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市民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新聞에 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稅務指導課長 金換吉; 저희들이 1년에 賦課 및 徵收하는 件數가 約 3,200萬件에 이르다 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年 2個月만에, 중간에 전혀 없다가 1年 2個月만에 독촉장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1月과 12月이 滯納整理 重點期間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바로 우리 체납부에 올라와 있다든가 또는 그 동안에, 사전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하튼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電算으로 고지서가 독촉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朴委員님께 1年 2個月만에 아마 도착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중간에는 왜 그런 과정이 없었느냐, 원칙적으로는 納期가 지나면, 15日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열흘간의 기간을 주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착오가 됐던, 行政人力이 모자라서 그랬던간에 아마 그런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朴委員님께서 金融機關에 納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區廳에서 정리를 할 경우에는 金融機關에서 통보하는 領收證이 있습니다. 그 통보분을 받아야 정확히 부과된 것하고 금액 여부와 맞추어서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實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金融機關의 통보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職員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미처 빠뜨려서 한 장씩 넘겨야 될 것을 두 장씩 넘긴다든지,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만약 二重納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二重納付가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過誤納으로써 분류가 되어서 還付措置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동안에 加算稅가 만약 붙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그 부분도 만약 내신 부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전부 全額 還拂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南植 委員;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그것을…….

○稅務指導課長 金煥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EDI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稅務電算化綜合計劃을 세운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착오가 없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日日決算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그러한 사례를 최소화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稅金에 대한 領收證은 5年間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消滅時效期間이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상으로는 納稅義務者가 納付한 領收證을 5年間 보관을 하고 있어야 對抗力이 사실상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경우에 어떻게 5年 동안 領收證을 모아둘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사를 다닌다든지, 설사 이사를 안 간다 할지라도 지금 각종 公課金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5년이면 상당량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보관한다는 것도 사실상 기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全 國家的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靑瓦臺內에 있는 國家競爭力企劃團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1年 바로 직전의 領收證 하나만 보관이 된 것으로써 對抗力이 생기도록 하는 制度를 지금 補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바로 아까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전의 납부사항에 대한 것이, 전기에 대한 것이 반드시 명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납하면 완납이 되어 있다, 또 체납이 되어 있으면 얼마큼이 滯納이 되어 있다 하면 그것 한장만 보관하고 있으면 가능토록 이 制度를 지금 개선을 할 것을 목표로써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초 중에는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朴南植 委員; 잠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鎮珍;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朴南植 委員; 商業銀行 太平路支店에서 서울시에 돈을 寄與한 내역 및 금액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988年에서부터 1995年까지 자료받은 내역으로는 50億 3,500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는 10億 1,000萬원, 1989년에는 5億 원, 그리고 1990년에는 역시 또 6億원이 되겠습니다. 91년에는 6億원, 92年 6億원, 93년에는 5億 5,000萬원, 그리고 94년에 5億 500萬원, 그리고 95년에는 6億7,000萬원 해서 50億 3,500萬원이고요,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領收證을 발부했는지 안 했는지 領收證이 그 쪽에 처리되지 않은 件이 2件이 있습니다.

1994年 5月, 이것은 날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5月 해놓고 한국근대미술전시회 지원금이라고 해서 世宗文化

會館에 500萬원을 支援한 것이 있는데 領收證이 없어요. 그 다음에 95年 7,500萬원을 남산제모습가꾸기 행사에서 서울市長에게 냈는데 領收證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에, 그 분들이 95年 안에 8月하고 또 9月, 그 다음에 날짜가 중복되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95年 8月 15日 光復 길놀이행사 2,000萬원, 95年9月 25日에서 10月 23日 사이에 분수대 광장축제라고 해서 650萬원, 95年 8月 5日에서 6日 참푸른 문화한마당이라고 해서 1,500萬원, 95年 2月 2日 이것도 밑에다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설날맞이공연해서 6,000萬원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 商業銀行이 80年 동안, 그 동안에 獨占契約으로 하여금 늘 우리 서울市에 그저 은혜와 감사로 서울市에다 이렇게 寄贈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本委員은 이면에는 서울市에서 商業銀行에 많은 특혜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局長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그 동안에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우리 社會福祉에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요망합니다.

두번째는 文化會館, 世宗文化會館에 1994年하고, 1995年 豫算決算內譯書를 좀 자료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商業銀行이 各 市에, 各 部處에 寄附金を 낸 부분은 사실 財務局의 市金庫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市金庫 부분이면, 만약 財務局이 그것을 주선을 하고 했으면 그런 결과가 오는데 財務局에서 그런 주선을 한 일도 없고, 또 領收證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領收證을 안 받고 왜 줬는지, 그럼 개인이 이것을 한 문제

인지 하는 것은 그 主管局하高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朴南植 委員; 領收證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領收證이 없다고 합니다, 領收證 處理는 안 됐는데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財務局長 權五虎; 글썄, 그 부분들은.....

○朴南植 委員; 찾아보니 領收證 없다고.

○財務局長 權五虎; 領收證이 없이 했다는 것은 公的인 사용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용도라든지 이것은 분명하게는 이 商業銀行 市金庫支店과는 관계없이 저는 한 행위로 지금 봐집니다. 또 이 市金庫를 전제로 우리 財務局이 그런 요청을 해온 사실도 분명히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기금 내역하고, 文化會館 94年, 95年 決算事項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南植 委員;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안에 環境美化員 子女獎學金이랄지, 그밖에 靑少年自立基金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불우이웃돕기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그렇습니다.

○朴南植 委員;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으며,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것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진짜 그 돈이 가장 소외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불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제가 保社局長을 해서 그 基金은 전부 保社局에서, 保社局窓口로 基金化가 되어 있습니다.

- 朴南植 委員;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 財務局長 權五虎; 그래서 그것은 保社局에서 朴南植委員님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錫珍; 金勝子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勝子 委員; 간단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補充質疑 성격이 되겠는데요, 아까 同僚委員이 질문한 사항 가운데에서 瑞草洞 垆地와 여기 西小門에 있는 大法院廳舍 垆地 문제에서 그것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契約 件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文件을 5年이라는 時限에서 廢棄處分했다면 廢棄를 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라든가 그 상황 일체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市有地賣却 抑制 및 償還土地 확보, 여러 가지 市 財産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市有地 賣却抑制를 위해서는 財産賣却은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賣却한다 그랬는데, 市有地라든가 賣却, 또 買入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문제를 보다 저기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市長이면 市長, 아니면 뒤에 보면 契約審査委員會 같은 것이 있는데 市有財産을 賣却하거나 買入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市長인지 어느 公務員인지, 아니면 어떤 委員會를 통해서 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財務局長 權五虎; 거기 그 자료는 廢棄處分했으면 그 서면이라든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내일 있으면 있는 자료를,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유라든지 그것을 명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市有地 賣却 책임의 주체는 우리 管財課長이 주관을 하고, 규모에 따라서 요새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占有財産이라든지 혹은 100坪 미만의 아주 소규모 垡地로서 일부 짜투리 땅 같은 것을 賣買하고 있는데 그것은 局長 專決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價格은 아까처럼 鑑定評價를 해서 그 價格에 의해서 지금 賣買를 하고 있고, 아까 그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公有土地審議委員會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公有土地審議委員會에서 파는 문제, 사들이는 문제를 하고, 또 사고 팔 때에는 큰 財産에 대해서는 市議會의 同意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당한..... 보완자료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자기 혼자 뭘 팔거나 이렇게는 안하도록 그런 制度的 장치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黃仁明 委員; 局長님께서 큰 財産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어떤 상한선이 있는 것인지.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委任專決規程에 나와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專決規程에.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黃仁明 委員; 네, 알겠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래서 대략 1,000坪이상인 경우는 市長까지 方針을 받고요, 그 다음에 1,650m<sup>2</sup> 이상인 경우에는 副市長, 그다음에 500m<sup>2</sup> 이하인 경우에는 局長님 方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議會에 同意받는 것은 당해 財

産이 5億원 이상인 경우에는 議會 同意를 받아서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 절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土地賣却을 하는 것이 딱히 制限되어 있습니다. 새로 市長님이 오셔서 都市計劃事業者라든지, 公共機關에 賣却한다든지, 또는 짜투리 땅, 占有財産 이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옛날 같이 公賣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鄭水華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鄭水華 委員; 西大門國 延喜洞 200의 131番地 外 4筆地 4,219m<sup>2</sup>가 85年 10月 30日 녹지조성을 목적으로 8億 8,531萬 6,000원에 이렇게 매입이 됐고, 西大門區 延喜洞 203의 1番地 外 2筆地 土地 6,968m<sup>2</sup>와 건물 1,480.15m<sup>2</sup> 이것은 1986年 3月 6日 公用廳事 확보 목적으로 17億 7,400餘 萬원으로 이것은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全斗煥 大統領 사저 뒤에 있는 우리 市有地로서 지금까지 10餘 年 동안 서울시 市史編纂委員會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警察 哨所가 3個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10餘 年間 방치가 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땅들이 실질적으로 매입목적에 맞게 주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녹지 목적으로 진정 샀는지, 또는 公用廳舍가 꼭 필요해서 延喜洞에다 살수밖에 없었는지, 그 주변 환경상으로 보서는 延喜洞 全斗煥 大統領 사저에 오히려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더 좋게 할 목적으로 그것을 사들여서 여태까지 방치 되었다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土地

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저번에 本會議에서도 한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延喜洞 200의 131番地 4,219m<sup>2</sup>의 경우에는 前職 大統領의 신변안전과 경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85年 10月과 86年 3月 2次에 걸쳐서 土地를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 활용현황을 보면, 85年 10月에 매입한 延喜洞 200의 131番地 4筆地 1,276坪은 녹지를 조성해서 느티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등 6,800株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 녹지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현재 울타리가 되어 있고 상당히 숲이 울창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현재 그것은 앞으로도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86年 3月에 루터교財團과 교환 취득한 延喜洞 203番地 1外 2筆地 2,108坪과 건물 488坪은 公用 廳舍 敷地로 都市計劃을 결정하여 현재 우리 市の 市史編纂委員會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市政開發研究院이 생기기 전에 市政研究團하고 같이 하다가 市政開發研究院이 생기면서 그리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財産의 규모라든지 가치에 비해서는 우리 市가 활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든지 보다 활용대책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相男 委員; 아까 景福宮 일대의 땅이라든가 宮井洞 일대의 땅과 결국 마찬가지로 얘기인데, 조금 전에 우리 鄭水華 委員께서 질문하신 것과 다 같은 차원의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政府에서 이것을 하려니 國會通過를 해야 되는데 豫算이, 國會議員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言論에서 가만히 안 있다는 말이에요, 난리가 나니까 만만한 서울市 보고 다 시켰다 말이에요, 이것을. 서울市는 흔적이 없이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앞으로는, 물론 우리 市議會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執行部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은 提案도 안 들어오겠지만 확실하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政府次元에서 자기들이 國有地로 사든가 청와대 警護室에서 사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서울市에 이런 것을 떠맡기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 局長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이랬으니까 제가 한 마디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李廷義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廷義 委員; 財産管理課에 내일 소명자료를 해 주시면서 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94年 이후 서울市內 公有財産無斷占有 現況 및 不法使用에 따른 辦償金 賦課實績 해서 다섯 委員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보니까 94年度 몇 件에 얼마, 賦課金額 얼마 이것은 報告書지 監査資料가 아닙니다. 최소한 監査를받겠다는 자세라면 委員들이 물어보는 내용은 無斷占有 現황이 몇 番地에 面積이 얼마이고, 無斷占有를 누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賦課를 어떻게 했는데 徵收를 어떻게 했고, 현재 法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年度別94年度 268件, 辨償金額 얼마 賦課 이런 형식적인 보고, 이것은 行政報告지 이것이 무슨 監查資料입니까, 이것이?

이것을 내일 중으로 정확하게 地番, 面積, 無斷占有者, 使用用途, 賦課面積, 賦課金額, 그 다음에 징수금액, 法的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내일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관계를 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契約에 보니까 調達廳 말고 자체에 보면 隨意契約이나 또 一般競爭이 많은데, 특히 調達廳에서 하는 것은 거의 80%내지 85%에서 落札이 되었는데 자체에서 한 것을 보니까 隨意契約은 전부가 다 99%, 97% 이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쪽 페이지에 보면 31페이지에 302번, 306번, 33페이지에 323번 99.1%전부 이렇게 隨意契約이 90%이상 99%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隨意契約에 3페이지 25번부터 38번까지가 전부 99.9%입니다, 隨意契約 落札率이. 이것에 대한 소명을 정확히 해서 이것도 내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답변을 듣기가 뭐하니까 내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0에 보면 隨意契約 緊急이라고 되어 있는데 自治區 分區廳舍 칸막이 施設工事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緊急事項인지 原因糾明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78페이지에 보면 39번하고 40번이 있습니다. '94서울市 投資機關 經營實績 評價研究用役인데 이것도 緊急으로 해서 隨意契約을 했어요. 市民아파트 緊急救助 安全診斷같은 경우는 隨意契約이라고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經營實績 研究評價인데 이것이 緊急입니까, 그래서 98.9%에 隨意契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명을 내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梁敬淑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서울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주관에 계속 言論에도 報道가 되고 있습니다만 隨意契約에 의해서 市金庫 指定을 다시 商業銀行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隨意契約으로 80年이나 市金庫를 商業銀行으로 지정하여 왔는데 또 다시 再契約을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시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財務局長께서는 지난 11月 14日 서울시議會 財務經濟委員會 行政事務調查委員會가 주관한 서울시 資金運用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政策討論會에서 市金庫契約을 公開競爭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는 또 다시 商業銀行과 隨意契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를 했고, 預金の 20%에서 30%를 金利를 높이기 위해서 公開入札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또 오늘 言論에는 市金庫와 관련해서 銀行을 바꾸지 않고 現行대로 商業銀行과 住宅銀行을 유지하는 대신 利子를 더 받는 特約을 맺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財務局長은 市議會의 의견을 존중해서 市中 金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市 政策會議를 거쳐 特約問題를 조만간 銀行側과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言論에 밝힌 적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그 부분은 제가 公聽會席上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公聽會席上에서 지금 당장 公開는 곤란하고 商業銀行과 特約契約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는 特約契約을 하고 또 20%내지 30%는 公開하는 方案을 가지고 市 政策會議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公聽會에서도 얘기했고 記者들도 와서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20%에서 30%를 公開入札하겠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하나의 代案으로써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 提案한 부분들도 그 代案으로해서 市 政策會議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梁敬淑 委員; 市議會의 의견을 존중해서 商業銀行과 住宅銀行을 유지하는 대신 特約을 맺을 방침이라고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市議會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고, 누구한테 언제 의견을 존중받았는지, 또 어떠한 의견을 누가 開陳을 했기 때문에 市議會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市가 이번에 調査를 해서 建議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약된 市議會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같이 政策會議에 上程을 할 예정입니다.

○梁敬淑 委員; 市議會의 意見書에는, 또 市議會가 조사한 결과보고서에는 분명히 特約하라라는 부분은 단 한 줄도, 한 마디도 없어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特約은 제가 提案한 案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왜 여기에 市議會의 의견을 존중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존중.....

○梁敬淑 委員;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市議會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말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했다

고 그랬지요?

지금 금방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財務局長 權五虎; 市議會에…….

○梁敬淑 委員; 이렇게 밝힌 적 있느냐라고 했더니 公聽會에서도 답변했고, 言論 記者들한테도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했는데…….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公聽會에서…….

○梁敬淑 委員; 市議會的 의견에는, 市議會的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단 한 마디도 特約하라는 말도 없고 商業銀行과 住宅銀行과 隨意契約하라라는 말도 없어요.

○財務局長 權五虎;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商業銀行과 特約을 한다는 얘기는 市議會가 建議한 案이 아니고 제가 낸 案입니다. 또 20%, 30%도 제가 낸 案입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市議會가 건의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調査를 해서 건의한 案을 같이 政策會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지난번 9月 19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本委員이 本會議에서 公開競爭 방식을 통해서 市金庫를 선정하는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 때 財務局長은 두 번씩이나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公開競爭入札 방식을 포함해서 市議會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金庫指定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시면 지금 당장에 契約을 하는데, 첫번에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代案으로 내왔을 때도 그것이 당장은 안 된다는 얘기를 거기 단서에 붙였습니다.

○梁敬淑 委員; 당장 되든 안 되든 그 문제가 아니라 市議會



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수렴해서 金庫指定 문제를 결정 하겠다라고 했는데.....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존중하고 해서.....

○梁敬淑 委員; 市議會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수렴도 안하고 의논 한 마디 없이 商業銀行하고 隨意契約했다라는 것을 言論에 이렇게 발표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분명하게 하세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렴은 그러면, 그 이외에 지금 우리 金庫,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이외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梁敬淑 委員; 무슨 建議를 했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 이번에 小委 調査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梁敬淑 委員; 그것이 建議案입니까, 調査報告書이지.

○財務局長 權五虎; 거기에 보면 建議案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梁敬淑 委員; 그것이 무슨 建議案이에요. 調査한 결과를 낸 것이지, 그것이 建議하는 것입니까? 市議會에서 調査한 것이 建議하는거예요, 서울市에 이렇게 하라고 建議드리는 거예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럼 그것은 뭐니까, 그러면. 그것이 改善建議案 아닙니까?

○梁敬淑 委員; 調査를 한 결과보고서란 말이에요.

○財務局長 權五虎; 글썄,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의견으로 보고 그것을 政策會議에 해서 政策會議에서 그것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리고 市議會 本會議場에서 전체 議員들이 있는 데서 답변한 부분을 의견수렴이라든지 의견절차 과정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議會 어디에다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발표를, 계속 言論에 지금 報道하고 있는데 과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저는 공식석상에서.....

○梁敬淑 委員; 議會 전체 議員들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거예요?

○財務局長 權五虎; 공식석상에서 저는 그런 답변을 했고, 어떤 저의 私見을 얘기한 일도 없고,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발표를 했던 사항들이 言論에 자료도 그렇게 나갔고, 또 記者들이 왔을 때 그런 제 뜻은 계속 그런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도 그렇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記者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랬고, 委員들한테도 전부 몇 名한테 전화를 했지요, 隨意契約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本委員도 그 전화를 받았는.....

○財務局長 權五虎; 네.

○梁敬淑 委員; 隨意契約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봐달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전화 했잖아요?

○財務局長 權五虎; 委員님들한테 제가 전부한 일도 없고 梁委員님한테 했고, 또 몇 분한테 했어요, 몇 분.

○梁敬淑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논도 하지 않고 委員들 하고 本會議에서 답변한 그런 내용들이 목살되고 그런 식으로 우롱을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財務局長 權五虎; 저는 목살한.....

○梁敬淑 委員; 적어도 委員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데.....

○財務局長 權五虎; 구체적으로 목살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나는 목살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議員들이

제시.....

○梁敬淑 委員; 本會議에서 議會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을 해서 앞으로 金庫選定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미, 또 財務局長은 이미 公聽會를 통해서 公開競爭은 어렵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것이 목살한 것이 아니고 뭐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公聽會 席上에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公聽會를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수차 사양을 했습니다. 議會에서 당초에 그것을 넣을 때 저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넣었고, 또 그 부분에 사양을 했는데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 그 市의 입장 정리를 분명히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런 양해하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거기 와서도 자꾸 그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하겠다는 논의를 자꾸 提案하는 것도 제 양심상 그것은 거짓말 같아서 그것을 분명히 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委員님들의 의견수렴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委員님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제가 요청을 몇 번했습니다. 한번 토의를 합시다 하는 것도 했는데 公聽會 이상으로 더 토의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이번에 監査報告書를 통한 改正建議案으로써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政策會議에 회부를 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李廷義委員님 發言해 주십시오.

○李廷義 委員;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지금 물론 言論에 나온 것을 가지고 財務局長이 그렇게 했다라는 方針이라고 하기에는 言論이라는 것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앞서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에는 저희들도 일단 의심이 갑니다. 단, 지금 財務局長께서는 지난 번 公聽會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비공개로 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公開競爭으로 가야만 마땅하나 현 시점에서 OCR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모험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財務局長 입장에서는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定期預金의 2,30%를 일반市中銀行에 公開競爭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현실 代案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 그것도 다시 짚고 넘어가면 그 案과, 제가 두 가지 案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것을 政策會議에서 上程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李廷義 委員;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난 번에 한겨레신문에 報道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랬고, 지금 局長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事務調査를 통해서 本會議에 앞으로 是正方向이라든가 앞으로의 改善案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낸 그 案을 政策會議에 반영해서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가지 않았지요, 아직 도착 안했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李廷義 委員; 아직 안 보냈지요? 그것이 우리 調査委員會 전체의 案이고, 또 그것이 사실상 가면 거기에 대한 代案提示가 당연히 나와야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또 特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商業銀行과 住宅銀行을 그대로 유지하고 利子만 더 받는 것으로 方針이라고 나왔다고 보

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財務局長님께서서는 당초에 서울시가 案을 내놓은 2·30%의 定期預金을 이제 公開競爭에 부쳐서 하는 案하고, 그 다음에 우리 議會가 이번에 調査를 통해서 勸告決議案으로 의결을 했던 그 案에 보면 여러 가지 案들이 많습니다, 改善案 是正案해서 여러가지 案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方針을 정하겠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新聞報道대로 商業銀行과 住宅銀行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데에다 일체2·30% 그것도 없고 特約만 맺어서 金利만 좀 더 받고 말겠단다는 것인지 그 답변만 해 주시면 오늘 이 얘기는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新聞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군요. 그래서 그것을 좀 局長님께서 확고히 해주시면, 지금 局長님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 문제는 분명히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金相男 委員; 좋아요, 뭐 隨意契約을 해서 住宅銀行은 住宅開發促進法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商業銀行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執行部에서 우리 市議會의 建議案을 충분히 참작하시되, 또 현실적인 여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執行部에서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建議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러 이리한 사유로 적용이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特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制度改善小委員長을 맡아서 세 번 會議를 했고, 그 후에 우리가 財務局하고도 여러

번 했지만 特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建議案이라든가 이것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金利自律化가 그전에는 우리가 1個月 이상짜리, 93년부터는 1個月 이상짜리만 金利自律化가 있었지만 금년도 7月 24日부터 1年 미만 6個月 이상짜리도 가능했고 11月 20日附로 6個月 미만 저축성예금도 金利自律化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特約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내고금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特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特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이고, 隨意契約이나 이런 것은 좋아요. 우리도 건의한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도 다 여기서 의논해서 건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特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基準金利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特約을 해야 되고, 1個月짜리는 얼마, 3個月짜리는 얼마, 6個月짜리는 얼마. 12個月짜리는 얼마, 中途解約 金利까지도 特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隨意契約 문제라든가 銀行 選定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政策會議에서 통과되는, 어떤 결론이 나면 또 우리 議會에 와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논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特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權五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초에 提案했던 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商業銀行과 住宅銀行을 그대로 두고 全體額數를 그냥 利率만, 特約이라는 뜻은 현재보다는 좀 더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特約에 의하는 方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特約에 의해서 하되 定期, 長期, 定期가 아니고 長期

1年 이상 정도의 한 20 %, 30 %만 公開를 하는 方案, 두 가지 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案과 그 다음에 議會에서 넘어오는 案을 하나로 ..... 그것이 하나가 될지 두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같이 政策會議에 上程을 해서 政策會議의 결정에 따라서 措置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梁敬淑 委員; 저는 特約을 하든 무엇을 하든 隨意契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찬성을 할 수 없고 同意할 수 없습니다.

市金庫를 선정함에 있어서 公開競爭制度를 도입해야 하고,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特別會計는 두 개 이상의 金庫를지정을 함으로써 건전하고 어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財務局長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金庫 경쟁부분에 있어서 金庫를 전번에 公聽會 때도 나왔습니다만, 金庫自體를 여러 군데로 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때도 거기 하연섭 교수입니까, 연세대학교수가 발표한 문안에도 보면 資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말표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은 안합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金利가 公開金利로 가고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었으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市議會가 결국은 公開라는 것은 저는 金利의 公開라고 생각을 합니다. 商業銀行에다 계속 주고라도 지금 시중의 最高 金利를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金庫를 왜 바꾸느냐는 얘기는 안 나올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

이 다른 데 하고 똑같은 金利를 받으면서 거기에 그런 상태로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公開라는 얘기를 어떤 特定에 몇 개를 하는 것보다는 金利를 왜 적게 받느냐는 쪽에 저는 상당히 注重을 하고 있고 앞으로 金利의 公開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制限 留保한다는 뜻이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는 저도 同意를 합니다.

○梁敬淑 委員; 지금 金利自律化가 財務局長은 됐는지 안됐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이미 金利自律化는 다 발표를 했습니다. 政府次元에서도 定期預金, 積金金利를 완전自律化한다고 발표했어요, 얼마 전에. 이것으로써 완전 金利自律化는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金融機關의 金利競爭은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고, 서울시 利子收入도 이로 인해서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시 商業銀行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金利自律化 措置와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公開는 즉 金利公開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財務局長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公開하는 부분이金利만 公開해서 公開入札을 부쳐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金庫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당한 기준을 정해서 金庫로 아, 이 銀行은 金庫를 맡길 수 있는 銀行이다라는 차원에서 金庫를 지정하라는 의미이지, 돈 자체는 20%, 30%, 15%이렇게 많이 주겠다는 銀行에 무조건 주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委員들이 주장하는 것이. 알았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다시 한 번,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아니, 질문 안 받겠습니다.

지금 監査하는데 어디 執行部가 委員한테 질문을 합니까? 地方財政法施行令 第72條에 金庫로 하여금 法令, 條例, 規則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規定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市에는 條例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施行하는 條例를 制定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本委員은 올 12月末이 市金庫 3年 契約滿了日이기 때문에 地方財政法과 地方財政法施行令의 上位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市金庫 契約에 대해서 서울市議會에 審議 節次를 받아서 公開競爭方式으로 市金庫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그 선정기준 방식은 대내외적인 신용도를 좀 고려하고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이나 시민에 대한 편의 및 복지증진 기여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등의 制定 상태, 그리고 金庫 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서울市와의 앞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을 規定하여서 市金庫運當에 관한 條例案을 11月 17日 財務經濟委員會에 제출해서 上程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可否를 결정을 못하고 있고 上程만 한 실정이지만 公開競爭方式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公開競爭方式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財務局長이 이해하는 것처럼 金利를 公開競爭하라는 부분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特定銀行을 배제하라든지 議會 議員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特定銀行으로 꼭 하라라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金庫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투명한 競爭을 시켜서 객관적으로 모두 다 인정을 하는 金庫의 선정방식을 선택하라는 의미이지 어떤 銀行은 되고 어떤 銀行은 안 되고, 가장 합당한 銀行을 선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지, 公開競爭이 金利競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財務局長은 계속적으로 地方財政法에는 公開競爭方式과 隨意契約方式을 모두 다인정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코 틀립니다.

제가 그 法 條項을 읽어보겠습니다.

地方財政法 第61條 契約의 방법에 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公告하고 一般競爭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隨意契約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地方財政法施行令 第72條 金庫設置 契約에는 金庫의 설치는契約에 의하고 契約에는 金庫로 하여금 法令, 條例, 規則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約定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서울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國家를 상대로 한 法律施行令이 바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입니다. 그 第26條에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한 서너 페이지 됩니다. 여기에 金庫契約을 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는 項目은 또는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또 法的인 條文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보면 당연히 金庫는 公開競爭方式을 통해서 契約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타성적인 慣行에 의해서 隨意契約을

하는 부분은 本委員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法律違反이 아닌  
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좀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金相男委員님 발언해 주십시오.

○金相男 委員; 아까 우리 委員長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떤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우리가 여기 財務經濟委員會에서 調査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論議가 많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梁敬淑委員께서 말씀하신 隨意契約이 違法이라 하는 것은 地  
方財政法 第61條와 第64條에 의하면 틀림없이 市金庫는 市長  
이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市長의 固有權限이고,  
그 방법은 契約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契約은 公開入札  
하고 隨意契約이 다 되어 있습니다.

隨意契約에 대해서 施行令으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隨意契約한 것이 違法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梁敬淑 委員; 지금 金相男委員님.....

○金相男 委員;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제가 發  
言權을 갖고 있잖아요?

○梁敬淑 委員; 서울시 執行部입니까?

○金相男 委員; 아니, 執行部.....

○梁敬淑 委員; 제가 金相男委員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金相男 委員; 제가 얘기를 하니깐, 저도 시민의 대표예요.

○委員長 文錫珍; 梁委員님 들어 주십시오.

○金相男 委員; 저도 法을 알고 制度를 알기 때문에 하는 얘  
기인데 왜 남 발언하는데 자꾸 잘라요?

○梁敬淑 委員; 아니,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왜 金相男

委員이 답변을 합니까?

○委員長 文錫珍; 두 분 다 좀 자제해 주십시오.

○金相男 委員;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나도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委員長 文錫珍; 답변이 아니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세요.

○梁敬淑 委員; 그러면 정식 질문을 하세요.

○金相男 委員;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도 서울市를 위해서 그러고, 우리市民을 위해서 그러고, 우리 國家를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나는 10만 명의 市民의 대표예요.

○委員長 文錫珍; 다른 이야기는 제외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金相男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80年 동안 違法으로 隨意契約으로 市金庫를 지정했다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市長의 固有權限이고 執行部の 하나의 權限입니다.

단지 우리 市議會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너무나 收益性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建議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執行部에서는 우리의 建議案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 市金庫 문제에 대해서 政策會議를 더 거쳐서 결정을 하시되. 저희들과 충분히 의논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隨意契約, 公開入札을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法的으로 市長의 權限으로 隨意契約의 權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市長의 權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市議會는 行政調查를 거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建議案을 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執行部에서 어떻게 하

느냐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과 충분히 숙의하고, 그 다음에 契約書에 대해서 商業銀行과 契約을 할 때 그것이 꼭 公開로 할 수 있느냐 非公開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에 基準金利에 의해서 金利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金利自律化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各 金利에 대해서 自律적으로 협의를 내고 金利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執行部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고충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市議會 우리 議員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좋겠고,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財務局長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梁委員님께서 이것은 法の 違反이 아니냐고 수차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執行部가 이것은 法の 違反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隨意契約을 하고 해 왔습니다. 또 이 市金庫 지정을 서울市만 하는 것이 아니고 全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가 다하고 있는데, 다 같은 행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違法이 되었다면 다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違法은, 梁委員님은 違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違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條例의 制定 문제는 法の 범위내에서는 議會도 다 지정을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法에서 정한 市長의 權限을 초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市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梁委員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行政事務調査를 통해서 市金庫에 대해서는 수없이 질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자료도 보고, 討論會도 거쳤고, 그리고 條例制定의 절차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條例는 審議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上程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行政事務調査를 한 것은 분명히 市 執行部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行政事務調査를 한 것입니다. 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市가 이제는 그 市金庫를 선정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좀더 바르게, 과거에 관행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隨意契約이 옳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정으로 市民을 위한 市金庫 契約이 되기 위한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에 다 수렴을 해 났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신 局長님 이하 모든 關係公務員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自由競爭의 기본정신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運用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간은 自由競爭을 집어넣고, 그리고 金利에 있어서 물론 과거보다는 좀더 높은 金利를 받아야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討論會에서도 한 銀行에서 현재보다도 3% 이상 더 올릴 수 있습니다하는 그런 銀行의 幹部 얘기도 있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契約이 체결이 돼서 단지 과거 관행에 비해서 한 1% 올린 수준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市民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條例制定을 바로 施行하지 아니하고 審議를 연기한 까닭은 그러한 것이 市長에 대한 權限을 法律的으로 혹시 制限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한 기우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法律的인 制約 사항을 다 뺀 상태에서도 이러한 條例 制定이 혹시라도 완전한 작품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審議를 연기하는 쪽으로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條例에 대한 制定을 떠나서, 어제든 企劃管理室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法 制度 이전에 우리가 運用할 수 있는 것은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運用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法の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의 그대로 연속일 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市議會에서도 그러한 관행 때문에 運用을 잘할 수 없다고 하면 制度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市 執行部를 여러 가지 틀 속에 매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결코 시민을 위한다는 것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해를 달리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委員會 안에서도 있습니다만 공통된 사항은 공정하게 契約하고, 그리고 市民을 위해서 收益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財務局長께서도 현실적 制約 속에서 여러 가지 提案을 해 오신 사

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行政事務調査에 대한 結果報告書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반영되는 契約이 이번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분명하게 우리 委員會에서 따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市金庫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로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사항이십니까?  
(「네, 다른 사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金相男 委員;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地方稅審議委員會 運營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委員이 지금 委員長 財務局長을 포함해서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財務局長하고, 稅政課長, 稅務指導課長 우리 執行部에서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 辯護士 두 분하고, 稅務士 두 분, 일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審査請求審議實績을 보면 認容이 7.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밑에 訴訟을 보면 敗訴率이 상당히 높습니다. 民事訴訟은 25%이고, 行政訴訟은 37%나 됩니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많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審議委員會 구성이 일곱 분으로 외부 인원이 넷, 내부에서 세 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분들이 잘 못나옵니다. 잘 못 나오면 결국 3 대 3이 되든가 3 대 2가 되든가 해서 결국 내부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審査請求에서 認容이 7.6%밖에 안됩니다, 명백한 오류 외에는. 그러니까 市民들이 믿지 못하고 다 訴訟으로 갑니다. 訴



訟으로 가면 訴訟費 들고 法院에 왔다 갔다해야 되고, 辯護士 사야 되고 이것이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審議委員會의 구성을 좀 외부인을, 전문가를 좀 더 많이 해서 구성 좀 확실하게 공정한 심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 訴訟까지 안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委員會 이런 것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외부 인원이 많게도 만들어 놨어요, 일단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 분들이 잘 못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地方稅審議委員會만이라도 외부 인원을 많이 넣어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訴訟까지 안 가는 방향으로 좀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制度는 앞으로 서울市에 있는 다른 委員會에도 이것이 다 적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李亮漢 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이것이 제 직업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정하고 취소하고는 9件, 8件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民事訴訟에 36件, 25件인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敗訴 件의 숫자는 작는데 금액은 더 많습니다. 또 行政訴訟도 37%인데 112億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比率金額 자체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委員會 構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會計士가 빠졌어요. 왜 빠지느냐 稅金은 辯護士보다 會計士가 더 잘 압니다. 訴訟 문제는 辯護士가 더 잘 알는지 모르는데 어느 稅金審判委員會에 會計士가 빠진 稅金審判委員會 처음 봤습니다, 제가. 稅務士는 빠지는 것을 봤는데 會計士 하면 法律的인 해석만 하는 것이지 稅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또 辯護士가 審判 委員을 하면 법률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지 세법을 그렇게 잘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인원수를 늘린다면 會計士 한두 사람쯤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地方稅審議委員會라는 것이 審議機構입니다. 여기에서 認容이 되어도 行政官廳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制度的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審議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內務部의 準則이라든지 이 범위내에서 무슨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결정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審議委員會를 처음 하면서 상당히 그런 制約的인 문제에 대해서 改正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委員들하고도 같이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이 審議委員會가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行政이 지금까지 바로 시민편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官의 의도대로 지금 해왔던 것은, 지금까지 行政形態가 行政이 어떤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利益을 줬다고 보면 그것이 監査對象이 되어서 監査에서 懲戒를 받고 이런 것이 行政慣行으로 굳어져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市民의 입장에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제 그 規則 改正 같은 것도 이것이 內務部 規則에 들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改正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저희가 또 내일도 監査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지금 현안으로 급하게 하실 사항이 아니

시면 내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오늘 財務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 1日次, 그리고 저희 4代 議會 첫 번째 行政事務監査를 했습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會議 벽두에 우리의 行政事務監査 형태에 대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行政事務監査도 역시 업무보고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行政事務監査를 할 때 저희가 監査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 그러한 요구를 해 주시고 그러한 준비를 동시에 財務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監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市民을 대표한 委員들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방향을 또한 새롭게 생각해 보는 이러한 앞으로의 새롭게 생각해 보는 이러한 앞으로의 새로운 과제가 되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한 行政事務監査가 계속되기 때문에 다른 질의사항이 제시겠지만 내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局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財務局에 대한 1日次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고 내일 午後3時에 會議를 開議하여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財務局에 대한 1日次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8時17分 散會)

---

○出席監查委員

文錫珍 鄭水華 李亮漢  
金廣洵 金信浩 金洪奎  
白南善 梁敬淑 李延義  
黃仁明 金相男 金勝建  
盧載東 朴南植 金勝子

○專門委員

安錫洙

○被監查機關參席者

財務局長 權五虎  
會計課長 林綵瑾  
稅政課長 李君杓  
稅務指導課長 金煥吉  
財產管理課長 權赫模  
地籍課長 金復鎮

.....  
(부록)

(뒤에 실음)  
.....